

헌 법

I. 신 조

서 언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아래에 기록한 몇가지 조목을 목사
와 강도사와 장로와 집사로 하여금 승인할 신조로 삼을 때에
대한 예수교 장로회를 설립한 모(母)교회의 교리적 표준을 버
리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찬성함이니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信徒揭要書)와 성경대소요리문답은 성경을 밝히 해
석한 책으로 인정한 것인즉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알며 그 중에 성경 소요리 문답은 더욱 우리
교회의 문답책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신 조

1.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本分)에
대하여 정확 무오(正確無誤)한 유일(唯一)의 법칙이다.
2. 하나님은 한분 뿐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신(神)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
으시며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되시며 그 존재(存在)
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
심과 사랑하심에 대하여 무한하시며 변하지 아니하신다.
3. 하나님의 본체(本體)에 세 위(位)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 세 위는 한 하나님이라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同等)하시다.

4. 하나님께서 모든 유형물(有形物)과 무형물(無形物)을 그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사 보존하시고 주장하시니 결코 죄를 내신 이는 아니시니 모든 것을 자기 뜻의 계획대로 행하시며 만유(萬有)는 다 하나님의 착하시고 지혜롭고 거룩하신 목적을 성취하도록 역사하신다.
5.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사 생물(生物)을 주관하게 하셨으니 세상 모든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나왔은즉 다 동포 형제이다.
6. 우리의 시조(始祖)가 선악간 택할 자유능(自由能)이 있었는데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한지라 아담으로부터 보통 생육법(生育法)에 의하여 출생하는 모든 인종들이 그의 안에서 그의 범죄에 동참하여 타락하였으니 사람의 원죄(原罪)와 부패한 성품밖에 범죄할 능(能)이 있는 자가 일부러 짓는 죄도 있을즉 모든 사람이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공평한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7. 인류의 죄와 부패함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고자 하사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의 영원하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로만 하나님께서 육신을 이루었고 또 그로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영원한 아들이 참 사람이 되사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시라,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하사 동정녀(童貞女) 마리아에게 낳으되 오직 죄는 없는 자시라, 죄인을 대

신하여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복종하시고 몸을 드러 참되고 온전한 제물이 되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十字架)에 죽으시고 못박히셨다가 죽은 가운데서 3일만에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승좌하시고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 하시다가 그리로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세상을 심판 하러 재림하신다.

8.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께서 인생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나니 인생으로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권하시며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값없이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시며 또 그 안에서 역사하여 모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9.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사 사랑하므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저희를 미리 작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삼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저희에게 두텁게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로되 오직 세상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는 온전한 구원을 값없이 주시려고 하여 명하시기를 너희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여 본 받으며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을 복종하여 겸손하고 거룩하게 행하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지라, 저희가 받는 바

특별한 유익은 의가 있게 하심과 양자(養子)가 되어 하나님
 님의 아들의 수(數)에 참여하게 하심과 성령의 감화로 거
 록하게 하심과 영원한 영광이니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구원 얻는 줄로 확실히 알 수 있고 기뻐할지라, 성령께서
 은혜의 직분을 행하실 때에 은혜 베푸시는 방도는 특별히
 성경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10.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聖禮)는 세례와 성찬이라, 세례
 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병합하는 표적과 인(印)침인데 성령으
 로 거듭남과 새롭게 하심과 주께 속한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라, 이 예(禮)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
 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이요, 주의 성찬은 그리
 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니 믿
 는 자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유익을 받는 것을
 인쳐 증거하는 표라, 이 예(禮)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
 의 백성이 행할지니 주를 믿고 그 속죄제를 의지함과 거
 기서 좇아 나는 유익을 받음과 더욱 주를 섬기기로 언약
 (言約)함과 주와 및 여러 교우로 더불어 교통하는 표라,
 성례의 유익은 성례의 본덕(本德)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성례를 베푸는 자의 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만 그
 리스도의 복주심과 믿음으로써 성례를 받는 자 가운데 계
 신 성령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다.
11. 모든 신자의 본분은 입교(入敎)하여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
 도의 성례와 그 밖의 법례(法例)를 지키며 주의 법을 복종

하며 항상 기도하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주의 말씀으로 강도(講道)함을 자세히 들으며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심을 좇아 헌금하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심사(心思)를 서로 표현하며 또한 일반 인류에게도 그와 같이 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기 위하여 힘쓰며 주께서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심을 바라고 기다릴 것이다.

12. 죽은 자가 끝날에 부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보좌 앞에서 이 세상에서 선악간 행한 바를 보응(報應)을 받을 것이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한 자는 현저히 사(赦)함을 얻고 영광 중에 영접을 받으려니와 오직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 자는 정죄함을 입어 그 죄에 적당한 형벌을 받는다.

승 인 식

교회의 신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것으로 내가 믿으며 이를 또한 나의 개인의 신조로 공포하노라.

Ⅱ. 성경 소요리 문답

성경 소요리 문답

[문 1]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 하는 것이다.

(고전10:31, 롬11:36, 시73:24~26, 요17:22~24)

[문 2]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답]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갈1:8~9, 사8:20, 눅16:29~31, 24:27, 44, 요15:11, 딤후 3:15~17, 벰후3:2, 15, 16)

[문 3]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미6:8, 요5:39, 20:31, 3:16, 고전10:11, 롬15:4, 요일1:3~4)

[문 4]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답]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요4:24, 시90:2, 말3:6, 약1:17, 왕상8:27, 렘23:24,

사40:22, 시147:5, 롬16:27, 창17:1, 계19:6, 사57:15,
요17:11, 계4:8, 신32:4, 시100:5, 롬2:4, 출34:6,
시117:2, 출3:14, 시145:3)

[문 5] 하나님 한분 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답] 한분 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신6:4, 렘10:10, 요17:3, 고전8:4)

[문 6]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

[답]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입니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입니다.

(고후13:13, 마3:16~17, 28:19, 고후8:14, 요1:1, 행
5:3~4, 히1:3)

[문 7]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

[답]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엡1:11, 행4:27~28, 시33:11, 엡2:10, 롬9:22~23,
11:33, 행2:23)

[문 8]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답]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이루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하
시는 일로 하신다.

(계4:11, 엡1:11, 단4:35, 사40:26)

[문 9]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

[답]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 것도 없

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써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모두다 매우 좋았다.

(히11:3, 계4:11, 창1:1, 31, 시33:9)

[문 10]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답]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다.

(창1:27, 골3:10, 엡4:24, 창1:28)

[문 11]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답]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치리하시는 일이다.

(시145:17, 시104:24, 히1:3, 시103:19, 마10:29~30, 느9:6)

[문 12]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는가?

[답]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다. (창2:16~17, 롬5:12~14, 10:5, 눅12:25~28, 갈3:12)

[문 13]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있었는가?

[답] 우리 시조가 임의대로 자유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죄

를 범하므로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다.
(창3:6~8, 13, 고후11:3, 롬5:12)

[문 14] 죄가 무엇인가?

[답]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어기는 것이다.

(요일3:4, 약4:17, 롬3:23, 4:5, 약2:10)

[문 15]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인가?

[답]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그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이다.

(제13문 참조, 창3:6, 12~13)

[문 16] 모든 인종은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하였는가?

[답]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다만 저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그 후 자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종은 모두 그의 안에 있어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행17:26, 제12문 참조, 창2:17, 고전15:21~22)

[문 17] 이 타락이 인종으로 하여금 어떠한 지위에 이르게 하였는가?

[답] 이 타락은 인종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다.

(롬5:12, 갈3:10)

[문 18]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이 무엇인가?

[답]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에 유죄한 것과 근본 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으로 원죄라 하는 것이요, 아울러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죄다.

(롬5:12, 18~19, 고전15:22, 롬5:6, 엡2:1~3, 롬8:7~8, 창6:5, 약1:14~15, 마15:19)

[문 19]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

[답] 모든 인종이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서 생전에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다.

(창3:8, 24, 엡2:3, 롬5:14, 6:23, 막9:47~48)

[문 20]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 두셨는가?

[답]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택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 하셨다.

(엡1:4~7, 딤후1:2, 3:4~7, 갈3:21, 롬3:20~22, 요17:6)

[문 21]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가 누구인가?

[답]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는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므로 사람이 되셨으니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가지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다.

(딤후2:5, 요1:1, 14, 요10:30, 갈4:4, 빌2:5~11, 롬 9:5, 골2:9, 히13:8)

[문 22]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니 죄는 없으시다.

(요1:14, 히2:14, 마26:28, 눅1:31~42, 갈4:4, 히4:15, 히7:26, 눅2:5)

[문 23]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

[답]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신다.

(행3:22, 히5:5~6, 4:14~15, 계19~16, 사9:6~9, 시2:6)

[문 24]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답]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다.

(요15:15, 요20:31, 벧후1:21, 요14:26, 1:1, 4, 18, 16:13, 히1:1~2)

[문 25]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답]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다.

(히7:25, 9:14, 28, 롬3:26, 10:4, 히2:17)

[문 26]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답]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및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이다.

(시110:3, 사33:22, 고전15:25, 행12:17, 18:9~10, 2:36)

[문 27]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떠한가?

[답]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강생하심인데 또한 비천한 지위에 나서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금생에 여러 가지 비천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이다.

(눅2:7, 빌2:6~8, 고후8:9, 갈4:4, 사53:3, 마 27:46, 눅22:41~44, 갈3:13, 고전15:3~4)

[문 28]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어떠한가?

[답]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고전15:3~4, 행1:9, 엡1:19~20, 행1:11, 행17:31)

[문 29] 우리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답]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의 구속을 효력있게 적용하심을 인함이다.

(요1:12~13, 3:5~6, 딤후3:5~6)

[문 30]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셨는가?

[답]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엡2:8, 요15:55, 고전6:17, 고전1:9, 뱀전:5:10, 엡4:15~16, 갈2:20)

[문 31]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가?

[답]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다.

(딤후1:8~9, 엡1:18~20, 행2:37, 행26:18, 겔11:19, 36:26~27, 요6:44~45, 엡2:5, 살후2:13, 빌2:13)

[문 32]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무슨 유익

을 얻는가?

[답]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 과 양자로 삼는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금생에서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는다.

(롬8:30, 엡1:5, 고전1:30)

[문 33] 의롭다 하심이 무엇인가?

[답]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으시는 것이니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 주심인데 우리는 오직 믿음만으로 받는 것이다.

(엡1:7, 고후5:19~21, 롬4:5, 3:22, 24, 25, 5:17~19, 4:6~8, 5:1, 행10:43, 갈2:16)

[문 34] 양자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답]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효 중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요일3:1~2, 요1:12, 롬8:17)

[문 35] 거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답]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의 역사인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점점 죄에 대하여서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능히 살게 되는 것이다.

(살후2:13, 엡4:23~24, 롬6:4, 6, 14, 8:4, 뵤전1:2)

[문 36]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이 무엇인가?

[답]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양심의 화평한 것과 성령안에서 얻는 쾌락과 은혜의 증가함과 끝까지 굳게 참는 것이다.

(롬5:1, 2, 5, 14:17, 골1:10~11, 잠4:18, 엡3:16~18, 뵤후3:18, 렘32:40, 요일2:19~27, 계14:12, 뵤전1:5, 요일5:13, 요1:16, 빌1:6, 뵤전1:5)

[문 37]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답] 신자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눅23:43, 16:23, 빌1:23, 고후5:6~8, 살전4:14, 롬8:23, 살전4:14, 계14:13, 19:8, 행7:55~59, 요5:28)

[문 38]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답]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영광 중에 살아남을 입어 심판 날에 밝히 안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흠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고전15:42~43, 마25:33~34, 10:32, 살전4:17, 시 16:11, 고전2:9)

[문 39]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답]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 나타내 보이신 뜻을 복종하는 것이다.

(신29:29, 미6:8, 삼상15:22, 눅10:28)

[문 40]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이 무엇인가?

[답]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의 법칙이다.

(롬2:14~15, 10:5)

[문 41] 이 도덕의 법칙이 어디에 간략히 포함되었는가?

[답] 이 도덕의 법칙은 십계명에 간략히 포함되었다.

(마19:17~19, 신10:4)

[문 42] 십계명의 대 강령이 무엇인가?

[답] 십계명의 대 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 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 같이 하라 하신 것이다.

(마22:37~40)

[문 43]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인가?

[답] 십계명의 서문은 이러한 말이니 곧 나는 너희 하나님 이시니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자로다

하신 것이다.

(출20:2, 신5:6)

[문 44]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 되시고 우리 하나님도 되시고 또 우리의 구속자도 되시는 고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하겠다 하는 것이다.

(신11:1, 뵤전1:17~19)

[문 45] 제일계명이 무엇인가?

[답] 제일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신5:7, 출20:3)

[문 46] 제일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제일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한 참 신이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승인하여 그대로 그에게 경배하여 영화롭게 하라 하는 것이다.

(대상28:9, 신26:17, 마4:10, 시95:6~7, 29:2)

[문 47] 제일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제일계명에 금하는 것은 참신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거나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는 것과 그에게만 드리기에 합당한 경배와 영화를 다른 이에게 드리는 것이다.

(롬1:20~21, 시81:11, 14:1, 롬1:25)

[문 48] 제일계명 중에 나 외에라 한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제이계명 중에 나 외에라 한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것은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무 다른 신을 위하는 죄를 내려다 보시고 분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대상28:9, 시44:20~21, 시134:1~3, 신30:17~18)

[문 49] 제이계명이 무엇인가?

[답] 제이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진노하는 신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자손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수천 대까지 베풀리라 하신 것이다.

(출20:4~9)

[문 50] 제이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제이계명에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 중에 정하신 종교상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라 하는 것이다.

(신12:32, 32:46, 마28:20)

[문 51] 제이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제이계명에 금하는 것은 우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어떤 다른 방법으

로 하는 것이다.

(신4:15~16, 17~19, 행17:29, 신12:30~32)

[문 52] 제이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답] 제이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재가 되시며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며 홀로 자기에게만 경배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다.

(시95:2~3, 45:11, 출34:14, 시100:3, 고전10:22)

[문 53] 제삼계명이 무엇인가?

[답] 제삼계명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아니하리라 하신 것이다.

(출20:7)

[문 54] 제삼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제삼계명에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 하는 것이다.

(시29:2, 마6:9, 계15:3~4, 말1:14, 시138:2, 107:21~22, 전5:1, 시104:24)

[문 55] 제삼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제삼계명에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을 훼방하거나 악용하는 것이다.

(말2:2, 사55:12, 레19:12, 마5:34~35)

[문 56] 제삼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답] 제삼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에게는 형벌을 피할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저희로 하여금 그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

(신28:58~59)

[문 57] 제사계명이 무엇인가?

[답] 제사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키라. 옛새 동안에 네 모든 일을 힘써 하고 제칠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네 자녀나 네 노비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라. 옛새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제칠일에 쉬셨으니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삼고 복을 주셨느니라 하신 것이니라.

(출20:8~11)

[문 58] 제사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제사계명에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명하신 절기를 그의 앞에 거룩히 지키는 것이니 특별히 칠일 중에 하루를 종일토록 그의 거룩하신 안식일로 삼으라 하는 것이다.

(레19:3, 신5:12, 사56:2~7)

[문 59] 하나님께서 칠일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는가?

[답] 세상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하나님이 이레 중에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고 그 후로부터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는 이레 중에 첫날로 명하

셨으니 곧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

(창2:3, 눅23:56, 행20:7, 고전16:2, 요12:19~26, 출16:23)

[문 60] 어떻게 하여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겠는가?

[답]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쉽으로 할 것이니 다른 날에 합당한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까지 그치고 그 시간을 공사 예배에 바쳐
사용할 것이요, 그 외에는 사세 부득이한 일과 자선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렘23:3, 출16:25~29, 렘17:21~22, 시92:1~2, 눅
4:16, 사58:3, 행20:7, 마12:11, 막2:27)

[문 61] 제사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제사계명에 금하는 것은 그 명한 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주의하지 아니하여 나태함으로서 그
날을 더럽게 하거나 죄되는 일을 행하거나 세상의 여
러 가지 일과 오락에 대하여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

(겔22:26, 말1:13, 겔23:38, 사58:13, 렘17:24, 27)

[문 62] 제사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답] 제사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할
여러 가지 일을 위하여 여섯 날을 허락하시고 제칠일
은 자기가 특별히 주장하는 이가 되었다 하심과 자기가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과 안식일을 축복하신 것이다.
(출31:15~16, 레23:3, 출31:17, 창2:3)

[문 63] 제오계명이 무엇인가?

[답] 제오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하나님인 준 땅에서 네가 오래 살리라 하신 것이다.

(출20:12)

[문 64] 제오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제오계명이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인륜 관계 곧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하라 하는 것이다.

(엡5:21~22, 6:1, 5, 9, 롬13:1, 12:10, 레19:32, 엡6:1~5, 롬8:1)

[문 65] 제오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제오계명에 금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인륜 관계를 따라 마땅히 높힐 것과 행할 일을 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막는 것이다.

(롬13:7~8)

[문 66] 제오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답] 제오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장수함과 흥왕하는 복을 허락하심이니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이익이 있도록만 주시는 것이다.

(엡6:2~3)

[문 67] 제육계명이 무엇인가?

[답] 제육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출20:13)

[문 68] 제욕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제욕계명에 명하는 것은 일체 합리한 법대로 우리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힘써 보전하라 하는 것이다.

(마10:23, 시82:3~4, 욥29:13, 왕상18:4, 엡5:29~30)

[문 69] 제욕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제욕계명에 금하는 것은 불의하게 우리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하는 일들이다.

(행16:28, 창9:6, 마5:22, 요일3:15, 갈5:15, 잠 24:11~12, 출21:18~32, 신24:6)

[문 70] 제칠계명이 무엇인가?

[답] 제칠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출20:14)

[문 71] 제칠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제칠계명에 명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와 및 이웃의 정조를 보존하라 하는 것이다.

(마5:28, 엡4:29, 골4:6, 벧전3:2, 살전4:4~5, 고전 7:2, 엡5:11~12)

[문 72] 제칠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제칠계명에 금하는 것은 모든 깨끗치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

(마5:28, 엡5:3~4)

[문 73] 제팔계명이 무엇인가?

[답] 제팔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출20:15)

[문 74] 제팔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제팔계명에 명하는 것은 합리적인 법대로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얻고 또 증진하게 하라 하는 것이다.
(살후3:10~12, 롬12:17, 잠27:23, 레25:35, 빌2:4, 잠13:4, 20:4, 24:30~34, 신15:10)

[문 75] 제팔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제팔계명에 금하는 것은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불의하게 방해하거나 혹 방해될 만한 일이다.
(딤후5:8, 엡4:28, 잠21:6, 살후3:7~10, 잠28:19, 약 5:4)

[문 76] 제구계명이 무엇인가?

[답] 제구계명은 네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출20:16)

[문 77] 제구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제구계명에 명하는 것은 특히 증거할 때에 피차 진실함과 또 우리와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며 증진하게 하라 하는 것이다.
(잠14:5, 25, 스후8:16, 벰전3:16, 행25:10, 요삼12, 엡 4:15)

[문 78] 제구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제구계명에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함에 해되는 일이나 혹은 이웃의 명예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잠19:5, 9:16~19, 눅3:14, 시15:3, 골3:9, 시12:3,

고후8:20~21)

[문 79] 제십계명이 무엇인가?

[답] 제십계명은 네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노비나 소나 나귀나 네 이웃에게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 하신 것이다.

(출20:17)

[문 80] 제십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제십계명에 명하는 것은 우리 처지를 만족히 여기며 이웃과 그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이다.

(히13:5, 롬12:15, 빌2:4, 고전13:4~6 딤편6:6, 레 19:18)

[문 81] 제십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제십계명에 금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를 부족히 여기거나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탐하거나 이웃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한 불의한 행동과 감정이다.

(고전10:10, 갈5:26, 골3:5)

[문 82] 아무 사람이나 능히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답] 타락한 후로 사람만으로는 금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써 범한다.

(왕상8:46, 요일1:8~2:6, 창8:21, 약3:2, 8, 롬8:8, 3:9~10)

[문 83] 법을 범한 모든 죄가 다 같이 악한가?

[답] 어떠한 죄는 그 본질과 여러 가지 얽힌 끝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함이 있다.

(시19:13, 요19:11, 마11:24, 눅12:10, 히10:29)

[문 84]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이 무엇인가?

[답] 범한 죄마다 받을 보응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다.

(갈3:10, 마25:41, 약2:10)

[문 85] 우리가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받을 진노의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답] 우리가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나타내는 방법을 힘써 사용하라는 것이다.

(행20:21, 막1:15, 요3:18, 제88문 참조, 벨후1:10, 히2:3, 딤후4:16)

[문 86]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복음 중에 우리에게 주신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이다.

(히10:39, 요6:40, 1:12, 빌3:9, 행16:31, 계22:17)

[문 87]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

[답]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참으로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자기 죄를 원통히 여기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든든하게 결심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새로이 순종하는 것이다.

(행11:18, 2:37, 욥2:13, 고후7:11, 렘31:18~19, 행26:18, 시119:59, 눅1:77~79, 고후7:10, 롬6:18)

[문 88]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이 무엇인가?

[답]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은 그의 규례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이것이 모두 그 택하신 자에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한다.

(마28:19~20, 행2:41~42)

[문 89]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가?

[답]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강설하는 것으로써 하나님의 신이 효력 있는 방법을 삼아 죄인을 반성시켜 회개하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시19:7, 119:13, 히4:12, 살전1:6, 롬1:16, 16:25~27, 행20:32, 1:8, 약1:21, 롬15:4, 딤후3:15)

[문 90]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는 방도가 되는가?

[답]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게 하려면 마땅히 부지런함과 예비함과 기도함으로써 생각하며 믿음과 사랑을 우리 마음에 두고 행실에 나타낼 것이다.

(잠8:34, 눅8:18, 뵤전2:1~2, 시119:18, 히4:2, 살후2:10, 시119:11, 18, 눅8:15, 약1:25, 신6:6~7, 롬1:16)

[문 91] 성례가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가?

[답] 성례가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 것은 성례 자체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베푸는 자의 덕으로 됨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축복함으로 되며 또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뵤전3:21, 행8:13, 23, 고전3:7, 6:11, 12:13, 롬2:28~29)

[문 92] 성례가 무엇인가?

[답]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그리스도와 그 새 언약의 유익을 깨닫는 표로 표시하며 인쳐 신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마28:19, 26:26~28, 롬4:11)

[문 93] 신약에 성례가 무엇인가?

[답] 신약에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마28:19, 고전11:23, 행10:47~48)

[문 94] 세례가 무엇인가?

[답]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합(接合)됨과 언약(隱約)의 모든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조함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이다.
(마28:19, 갈3:27, 롬6:3~4)

[문 95] 세례는 어떠한 사람에게 베푸는가?

[답] 세례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베풀 것이요, 또 입교한 자의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다.
(행2:41, 창17:7, 10, 갈3:17~18, 29, 행2:38~39, 18:8, 고전7:14)

[문 96] 주의 성찬이 무엇인가?

[답] 주의 성찬은 곧 성례이니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즙을 주며 받는 것으로 그 죽으심을 나타냄이다.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으로 참여함이 아니요,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자기의 신령하게 받은 양육과 은혜 중에서 장성함으로 그의 모든 효험을 받음이다.
(마26:26~27, 고전11:26, 10:16, 엡3:17, 행3:21)

[문 97]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답]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마땅히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것과 주님으로써 양식을 삼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새로 순종함에 대하여 스스로 살필 것이니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면 두렵건데 먹고 마시는 것이 정죄함을 자칭함이 될 것이다.

(고전11:28~29, 요6:53~56, 스후12:10, 요일4:19, 갈5:6, 롬6:4, 17~22, 고전11:27)

[문 98] 기도가 무엇인가?

[답]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여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요16:23, 시62:8, 요일5:1, 단9:6, 빌4:6, 시10:17, 145:19, 요일1:9)

[문 99]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시하시려고 주신 법칙이 무엇인가?

[답]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지시함에 유용한 것이나 특별히 지시하신 법칙은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니 보통으로 주기도문이라 하는 것이다.

(딤후3:16~17, 요일5:14, 마6:9, 시119:170, 롬8:26)

[문 100] 주기도문의 첫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답] 주기도문의 첫 말씀은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것이니 이는 자식이 그 능하고 보호하시기를 예비한 아버지에게 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모든 거룩하게

공경하는 뜻과 든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더불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가르친 것이다. (사64:9, 눅11:13, 롬8:15, 엡6:18, 행12:5, 스후8:21, 딤후2:1~2)

[문 101] 첫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답] 주기도문 첫 기도는 곧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함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다른 이로 하여금 능히 그를 영화롭게 하고 또 모든 것을 처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옵심을 구하는 것이다.

(시67:1~3, 살후3:1, 시145:, 사64:1~2, 롬11:36, 계 4:11)

[문 102] 둘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답] 주기도문의 둘째 기도에 나라이 임하옵소서 함은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여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로 들어가 항상 있게 하시고 또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옵심을 구하는 것이다.

(시68:1, 살후3:1, 시51:18, 67:1~3, 롬10:1, 계 22:20, 벧후3:11~13, 마9:37~38, 요12:31)

[문 103] 주기도문의 셋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답] 주기도문의 셋째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함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푸시사 우리로 하여금 능력 감심(甘心)으로 범사에 그의 의지를 알고 순종하며 복종하기를 하늘에서 천사들이 행함과 같이 하게 하옵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시119:34~36, 행21:14, 시103:20~22, 마26:39, 빌 1:9~11)

[문 104] 주기도문의 넷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답] 주기도문의 넷째 기도는 곧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함인데 하나님의 은사로써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것 중에 만족한 부분을 받게 하시며 아울러 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심을 구한 것이다.

(잠30:8, 9, 10:22, 딤펢전6:6~8)

[문 105] 주기도문의 다섯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답] 주기도문의 다섯째 기도는 곧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함이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사하여 주옵소서 함인데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능히 진심으로 다른 이의 죄를 사하였은즉 더욱 용감히 간구하는 것이다.

(시51:1, 2, 7, 롬3:24~25, 눅11:4, 마18:35, 14, 6:15, 막11:25)

[문 106] 주기도문의 여섯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답] 주기도문의 여섯째 기도는 곧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하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시거나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를 보호하여 구원하옵소서 하는 기도이다.

(마26:41, 시19:13, 고전10:13, 시51:10, 12, 요17:15)

[문 107]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답] 주기도문의 마지막 말씀은 곧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 믿고 또 기도할 때에 그를 찬송하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하라고 가르친 것이다. 또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뜻의 증거와 들으실 줄 아는 표로 아멘 하는 것이다.

(단9:18~19, 대상29:11~13, 계22:20~21, 빌4:6, 고전14:16)

Ⅲ.정 치

정 치

총 론

주후 1517년 신구 2대 분파로 나누어진 기독교는 다시 수다한 교파를 이룩하여 각각 자기들의 신경, 의식, 규칙, 정치 제도가 있어서 그 교훈과 지도하는 것이 다른 바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교황 정치...이 정치는 주로 로마 카톨릭교와 회랍 정교의 정치인 바 교황이 전제로 산하 전 교회를 관리하는 정치이다.
2. 감독 정치...이 정치는 감독이 교회를 주관하는 정치인바 감독 교회와 감리 교회에서 쓰고 있는 정치이다.
3. 자유 정치...이 정치는 다른 회의 관할과 치리를 받지 아니하고 각개 지교회가 자유로 행정(行政)하는 정치이다.
4. 조합 정치...조합 정치는 자유 정치와 방불하나 다만 각 지교회의 대표로서 조직된 연합회가 있어 피차 유익한 문제를 의논한다. 그러나 산하 교회에 명령하거나 주관하는 권한은 없고 모든 치리하는 일과 권징과 예식과 도리 해석을 각 교회가 자유로 하는 정치이다.
5. 장로회 정치...이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

당회는 치리 장로와 목사인 강도 장로의 두반으로 조직되어 지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서 노회 대회 및 총회 이같이 3심제의 치리회가 있다. 이런 정책은 모세(출30:16, 18:25, 26,

민11:16)와 사도(행14:23, 18:4, 딤후1:5, 벧전5:1, 약5:14)때에 일찍이 있던 성경적 제도요, 교회 역사로 보더라도 오랜 역사와 항상 우위를 자랑하는 교회는 이 장로회 정치를 채용한 교회들이며 또한 이 장로회 정치는 다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본으로 한 것인 바 이 웨스트민스터 헌법은 영국 정부의 주관으로 120명의 목사와 30명의 장로들이 1643년에 런던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 모여서 이 장로회 헌법을 초안하고 영국 각 노회와 대회에 수의 가결한 연후에 총회가 완전히 교회 헌법으로 채용 공포한 것이다.

본 대한 예수교 장로회 교회의 헌법도 1912년 총회가 조직되고 1917년 제6회 총회 때 본 총회의 헌법을 제정할 때에 이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초로 해서 수정 편성한 것이다.

제1장 원리(原理)

대한 예수교 장로회 정치의 일정한 원리 8개조가 있으니 이것을 이해하여야 교회의 성질을 알 것이다.

제1조 양심자유

양심의 주재는 하나님 뿐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過分)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侵害)하지 못한다.

제2조 교회 자유

1. 전조(前條)에 설명한 바 개인 자유의 일례(一例)로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자기 교인의 입회 규칙과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일체(一切)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設定)할 자유권이 있다.
2. 교회는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에서 각 종교의 종교적 기관을 안전 보장하며 동일시(同一視)함을 바라는 것 뿐이다.

제3조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직원을택하사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시행하게 하실 뿐 아니라, 신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管理)하게 하신 것이다. 이따므로 교우중에

거짓 도리를 신앙하는 자와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치리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할 것이다, 그러나 항상 성경에 교훈한 법례(法例)대로 행한다.

제4조 진리와 행위의 관계

진리는 선행의 기초라 진리가 진리되는 증거는 사람으로 성결하게 하는 경향(傾向)에 있으니 주 말씀하시되 「과실로 그 나무를 안다」 하심과 같으니 진리와 허위(虛位)가 동일(同一)하며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관계 없다 하는 이 말보다 더 패리(悖理)하고 더 해로운 것이 없다. 신앙과 행위는 연락하고 진리와 본분은 서로 결합(結合)되어 나누지 못할 것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진리를 연구하거나 선택할 필요가 없다.

제5조 직원의 자격

제4조의 원리에 의지하여 교회가 당연히 직원을 선정하되 교회의 도리를 완전히 신복(信服)하는 자로 선택하도록 규칙을 제정(制定)할 것이다.

그러나 성격(性格)과 주의(主義)가 다 같이 선한 자라도 진리와 교규(教規)에 대한 의견(意見)이 불합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교우와 교회가 서로 용납하여야 한다.

제6조 직원 선거권

교회 직원의 성격과 자격과 권한과 선거와 위임하는 규례는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어느 회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

제7조 치리권

치리권은 치리회로나 그 택해 세운 대표자로 행사함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봉 시행하는 것 뿐이다.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인즉 어느 교파의 치리회든지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자의(自意)로 제정할 권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에 기인(基因)한다.

제8조 권 징

교회가 이상(以上) 각조의 원리를 힘써 지키면 교회의 영광과 복을 증진(增進)할 것이니 교회의 권징은 도덕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요, 국법상의 시벌(施罰)이 아닌즉 그 효력(效力)은 정치의 공정(公正)과 모든 사람의 공인(公認)과 만국교회의 머리되신 구주의 권고와 은총에 있다.

제 2 장 교 회

제1조 교회 설립(設立)

하나님이 만국 중에서 대중(大衆)을 택하사 저희로 영원토록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게 하시나니 저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의 몸이요, 성령의 전(殿)이라, 전과 지금과 이 후에 만국의 성도니 그 명칭은 거룩한 공회라 한다.

1. 교회 설립에 관한 시행 규칙

1) 목적 : 사도적 전통과 복음주의 정신에 따라 영혼 구

원을 목적으로

2) 설립자 자격

- (1) 철저한 사명 의식자
- (2) 전도사 자격 인정된 자 및 강도사, 목사
- (3) 자비량

3) 장소 위치 및 규모 : 제한 없음

2. 교회 설립자의 특권

1) 담임 교역자로 임명됨(전도사, 강도사, 목사)

(1) 담임교역자 전도사 및 강도사에게 허락된 직무

- ① 부교역자 임명권
- ② 항존직 도모권
- ③ 제직 임명권
- ④ 제직회 회장권

(2) 담임전도사 및 강도사에게 불허된 직무

- ① 축도권
- ② 성례집행권
- ③ 말씀선포권(말씀 증거함이라 한다)

(3) 강도사가 복음주의 정신에 따라 교회설립자격이 갖추어지면 교회 창립 시 목사 임직을 청원 할 수 있고 항존직 임직식도 할 수 있다.

제2조 교회의 구별(區別)

교회에 두가지 구별이 있으니 유형(有形) 교회와 무형(無形) 교회라 무형 교회의 교인은 하나님만 아시고 유형 교회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니 그 교인은 그리스도인이

라 칭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이다.

제3조 교회 집회(集會)

대중이 한 곳에만 회집하여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으니 각처에 지교회를 설립하고 회집하는 것이 사리(事理)에 합당하고 성경에 기록한 모범에도 그릇됨이 없다.(갈 1:22, 계1:4, 20)

제4조 각 지교회(各 支教會)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公言)하는 자들과 그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그 원대로 합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결하게 생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에 교훈한 모범대로 연합하여 교회 헌법을 복종하며 시간을 정하여 공동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지교회라 한다.(행2:47)

제 3 장 교회 직원

제1조 교회 창설(創設) 직원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로 이적을 행할 권능이 있는 자로 (마10:8) 자기의 교회를 각나라 중에서 선택(選擇)하사 (시 2:8, 계7:9)한 몸(고전 10:17)이 되게 하셨다.

제2조 교회의 항존직(恒存職)

교회에 항존(恒存) 직원은 다음과 같으니 장로(감독)(행 20:17, 28, 딤펵전3:7)와 권사와 집사이며, 장로는 두 반이 있

으니

1. 강도(講道)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 교회의 대표자이며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

제3조 교회의 임시 직원

교회 사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직원을 안수(按手) 없이 임시로 설치(設置)한다.

1. 전도사 : 남·여 전도사를 당회(당회 없는 곳에는 지방 목사의 추천으로 총회가 고시하여 자격을 인가하면 유급 교역자로 당회나 목사의 관리하는 지교회 사무를 돕도록 한다.
 - ① 권한 : 장로 아닌 남·여 전도사로 그 당회의 회원은 되지 못하나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언권과 방청이 허락되고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임시 회장이 될 수 있다. 개척자에 한해서는 그 교회 담임을 위임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임명장을 받을 수 있다.
 - ② 자격 : 신학생과 신학 졸업자로 노회가 고시 인가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이 한도에서 벗어난다. 단 다른 노회에서 전도사 고시 받은 자와 총회 신학교를 졸업하는 필답 고사를 면제한다. 또는 당회장이나 노회장이 임명할 수도 있다.
2. 전도인 : 남·여 전도인은 유급 사역자로 불신자에게 전도

하는 자니 그 사업 상황을 파송한 기관에 보고하고 다른 지방에서 전도에 착수할 때는 그 구역 감독 기관에 협의하여 보고한다.

3. 남·여 서리집사 : 교회 혹은 목사나 당회나 신실한 남녀로 선정하여 집사 직무를 하게 하는 자니 그 임기는 1년이다.

제4조 준직원(準職員)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은) 준직원이다.

1. 강도사는 노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 강도사 고시 합격후 강도할 인허를 받고 그 지도대로 일하되 교회 치리 권은 없다.
2. 목사 후보생은 목사직을 희망하는 자로 노회에서 자격 심사를 받고 그 지도대로 신학에 관한 학과로서 수양을 받는자이다.
3.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은 개인으로는 그 당회 관리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 및 총회의 관리 아래 있다.

제 4 장 목 사

제1조 목사의 의의(意義)

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임직(任職)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자니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이다(롬11:13). 성경에 이 직

분 맡은 자에 대한 칭호가 많아 그 칭호로 모든 책임을 나타낸다.

1. 양의 무리를 감시하는 자이므로 목자라 하며(렘 3:15, 벧전 5:2~4)
2.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리스도의 사역자라 하며 또 신약의 집사라 하며(빌1:1, 고전 4:1, 고후 3:6)
3. 엄숙하고 지혜롭게 하여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고 그리스도의 집과 그 나라를 근실히 치리하는 자이므로 장로라 하며(벧전 5:1~3)
4.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이므로 교회의 사자라 하며(계2:1)
5.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죄인에게 전파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라 권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부르며 혹은 복음의 사신이라 하며(고후5:20, 엡6:20)
6. 정직한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역하는 자를 책망하며 각성(覺醒)하게 하는 자이므로 교사라 하며(딤후1:9, 딤후2:7, 딤후1:11)
7. 죄로 멸망할 자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이므로 전도인이라 하며(딤후 4:5)
8. 하나님의 광대하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설립하신 율례(律例)를 시행하는 자이므로 하나님의 오묘한 도를 맡은 청지기라 한다(눅12:42, 고전4:1~2). 이는 계급을 가리켜 칭함이 아니요, 다만 각양 책임을 가리켜 칭하는 것 뿐이다.

제2조 목사의 자격

1. 목사될 자는 신학을 졸업하고 학식이 풍부하며 행실이 선량(善良)하고 신앙이 진실하며 교수에 능한 자가 할지니 모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여 범사에 모범과 성결함을 나타낼 것이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외인(外人)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자로 연령은 만27세 이상자로 한다(딤펴전 3:1~7).
2.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되고 규정에 의한 목회 경력이 있어야 하고 목사고시에 합격되고 청빙을 받는자라 한다. 특별한 예외는 총회임원회에서 심사하여 허락 처리한다.

제3조 목사의 직무

하나님께서 모든 목사되는 자에게 각각 다른 은혜를 주사 상당한 사역을 하게 하시니 교회는 저희 재능대로 목사나 교사나 그 밖에 다른 직무를 맡길 수 있다(엡 4:11).

1. 목사가 지교회를 관리할 때는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강도하며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할 것이요, 하나님을 대표하여 축복하고 어린이와 청년을 교육하며 고시하고 교우를 심방하며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란 당한 자를 위로하고 장로와 협력(合力)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2. 목사가 신학교나 교회, 중등 정도 이상의 학교 교사로 청년에게 종교상 도리와 본분을 교훈하는 직무를 받을 때는 목자같이 그 학생을 돌아보며 구원하기 위하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를 뿌리고 결실되도록 힘쓴다.

3. 선교사로 외국에 선교할 때에는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설립하고 조직할 권한이 있다.
4. 목사가 기독교 신문이나 서적에 관한 사무를 시무하는 경우에는 교회에 덕의(德義)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하도록 힘써야 한다.
5. 기독교 교육 지도자로 목사가 노회나 지교회나 교회에 관계되는 기독교 교육기관에서 청빙을 받으면 교육하는 일로 시무할 수 있다.
6. 강도사가 위의 2, 4, 5항의 직무를 당할 때 노회의 고시를 받고 지교회 목사가 될 자격까지 충분한 줄로 인정하면 목사로 임직할 수 있다.

제4조 목사의 칭호

목사가 그 담임한 시무와 형편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칭호가 있다.

1. 위임목사 : 한 지교회나 1구역(4지교회까지 좋으나 그 중 조직된 교회가 하나 이상됨을 요함)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에 종신(終身)토록 시무한다. 위임목사가 본 교회를 떠나 1년 이상 결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위임이 해제된다.
2. 임시목사 : 임시목사는 공동 의회에서 출석 교인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청빙을 받으나 그 시무 기간은 1년간이요, 조직 교회에서는 위임목사를 청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형편이면 다시 공동 의회에서 3분의 2의 가결로 계속 시

무를 청원하면 1년간만 더 허락할 수 있다.

단 미조직 교회에서 임시목사 시무 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공동 의회의 3분의 2의 가결로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한다.

3. 부목사 :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니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되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
4. 원로목사 : 동일(同一)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만년(晩年)에 이르러 노회에 시무 사면을 제출하려 할 때에 본 교회에서 명예적 관계를 보존하고자 하면 공동 의회를 소집하고 봉급을 작정하여 원로 목사로 투표하여 결정한 후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의 결정으로 원로목사의 명예직을 준다. 단, 교회를 창립한 목사가 교회사역을 위임하였을 때는 원로목사로서의 명예직에 그치지 않고 동사(同事)자로의 전반 사역권은 지속된다.
5. 공로목사 : 25년 이상 목사로 목회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연로(年老)하여 목회할 수 없는 때에 노회는 그 공로를 기념하기 위하여 노회원 투표 3분의 2의 가결로 공로목사의 명예직을 준다. 원로목사와 공로목사는 지교회의 직무와 치리권은 없으나 노회의 정회원이 되고 다시 시무를 담임하게 되면 원로목사와 공로목사 명부에서 시무목사 명부로 옮긴다. 단, 창립하고 위임한 공로목사도 4항 단서와 동일한 권리가 보장된다.
6. 무임목사 : 담임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니 노회에서 언권

- 이 있으나 가부권은 없다.
7. 전도목사 : 교회 없는 지방에 파견되어 교회를 설립하고 노회의 결의로 그 설립한 교회를 조직하며 성례를 행하고 교회의 예배를 인도 한다.
 8. 지방목사 : 노회가 그 관할 지방 안에 많은 약한 교회가 있어 목사를 스스로 담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교회들을 권고하기 위하여 파송하는 목사나 성례를 행하며 노회의 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
 9. 종군목사 : 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배속된 군인교회에서 목회와 전도를 하며 성례를 행한다.
 10. 교육목사 : 총회나 노회와 관계되는 기독교 교육 기관에서 청빙을 받아 시무하게 되는 목사이다.
 11. 선교사 : 다른 민족을 위하여 외지에 파송을 받은 목사이다.

제 5 장 목사청빙 및 임직

제1조 위임목사 청빙

지교회에 위임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 의회를 소집하고 당회장은 위임청빙 투표를 실시하여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시 즉시 청빙 준비위원을 구성한다.

제2조 청빙 준비

청빙위원은 청빙준비를 위하여 상회에 보고하고 상회에서

도 위임식을 위한 제반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고 지교회가 준비해야하는 청빙위임목사 예우에 대해 계획을 세워 이도 상회에 보고할 것이다.

제3조 청빙 서식

○○곳 ○○교회 교인들은 귀하께서 목사의 재덕과 능력이 구비하여 우리 영혼의 신령적 유익을 선히 나누어 주실 줄로 확신하여 귀하를 본 교회 담임목사(혹 임시목사)로 청빙하오며 겸하여 귀하께서 담임 시무 기간 중에는 본 교인들이 모든 일에 편의와 위로를 도모하여 주 안에서 순복하고 주택과 매월 생활비 ○○를 드리기로 서약하는 동시에 이를 확실히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하여 청원하오니 허락하심을 바라나이다.

년 월 일

각 교인 연서 날인

증인, 공동의회장 서명 날인

귀하

제4조 청빙 승낙

어느 목사나 강도사에게든지 청빙서를 드리면 그 교회가 원하는 줄로 인정할 것이요 그 목사나 강도사가 그 청빙서를 접수하면 승낙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강도사가 청빙서를 받아 목사로 임직하게 될 경우에는 노회는 구애되는 것이 없으면 동시에 위임식까지 행한다.

제5조 청빙서 제정(提呈)

청빙서는 청빙받은 자를 관할하는 노회에 드릴 것이요 그 노회가 합당한 줄로 인정할 때는 청빙받은 자에게 전함이 옳으니 목사 혹 강도사가 노회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청빙서를 받지 못한다.

제6조 서약 변경

청빙할 때에 약속한 목사의 사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 목사와 교회가 승낙하면 노회에 보고하고 만일 승낙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노회에 보고하되 반드시 정식으로 공개한 공동의회를 경유한다.

제7조 다른 노회 사역자 청빙

다른 노회에 속한 목사나 강도사를 청빙할 때에는 그 지 교회가 청빙 위원을 택할지니 그 위원은 청빙서를 먼저 본 노회에 드릴 것이요 노회가 가합한 줄로 알면 조회서(照會書)와 청빙서를 합하여 그 노회에 전달한다. 그 노회는 그 청빙서가 합당한 줄로 인정하면 그 청빙받은 자에게 주고 청빙받은 자가 응락할 마음이 있으면 그 노회는 이명서를 줄지니 청빙받은 자가 만일 강도사이면 청빙한 교회를 관리하는 노회에 가서 임직 시험을 받게 한다.

제8조 임직 준비

총회는 청빙받은 자가 성직(聖職)을 받을 만한 자격자인 줄 확인하면 편의를 따라 임직식을 시무할 교회에서 행하고 또한 위임식도 그 시무할 교회에서 거행하되 그 교회 교인들은 이것을 위하여 준비 기도를 할 것이다 (행 13:2, 3).

제9조 임직 예식

1. 서약-안수위원장은 예정한 회원으로 임직에 적합하도록 강도한 후 회장이 정중히 취지를 설명하고 청빙받은 자를 기립하게 한 후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 ①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 ②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따르시겠습니까?
 - ③ 본 장로회 중앙총회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십니까?
 - ④ 주안에서 같은 성직 회원인 선배 목사를 존경하고 순종할 것이며 총회와 노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처소를 지켜 안수 받은 노회와 총회를 존중하겠습니까?
 - ⑤ 목사와 성직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본심(本心)에서 발생한 줄로 인정하십니까?
 - ⑥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힘써 도모하여 근실히 사역하므로 교인의 모본이 되도록 순종하고 복종하기로 작정하십니까?

⑦ 성도요 겸하여 목사가 되겠은 즉 자기의 본분(本分)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실행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명하사 관리하게 하신 교회 앞에 경건한 모본을 세우기로 서약하고 서약을 지키지 아니하였을때에 총회 헌법에 따라 처리됨이 합당하다고 승락하십니까?

2. 안수위원장이 전항에 의하여 서약을 마친 후에 안수받을 자를 적당한 곳에 꿰어 앉게 하고 안수위원장은 사도의 승계규례에 따라 안수기도하고 목사로 임직한 후 악수례를 행하며 말하기를 「성역(聖役)에 동역자가 되었으니 악수로 치하하노라」한다 (갈 2:9, 행 1:25).

3. 공 포 : 안수위원장은 성삼위의 권위로 만천하에 공포할 것임.

4. 권 면 : 안수 받은 신임목사는 안수서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수서약 위반시는 목사안수 취소가 될 수 있다.

제10조 위임목사 승계 규정

1. 지교회의 설립교역자가 후임에게 위임승계 하고자 할때 설립자의 지명받은 교역자에게 위임승계가 된다.

2. 개척자가 아닌 지교회 교역자가 후임자 청빙을 요청 할 때는 청빙절차를 밟는다.

제11조 위임목사 승계

위원회는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예식을 다음과 같이 행한다.

1. 목사의 서약

- ① 귀하가 청빙서를 받을 때에 원하던 대로 이 지교회의 목사 직무를 담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 ② 이 직무를 받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에 유익하게 하고자 함이니 본심으로 작정하십니까?
- ③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는 대로 이 교회에 대하여 충심으로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신 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때에 승낙한 대로 행하기를 맹세하십니까?

단 전임하는 목사를 위임할 때에도 위와 같이 서약한다.

2. 교인의 서약

본 교회 교인들을 기립하게 한 후에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 ① ○○교회 교우 여러분은 목사로 청빙한 ○○씨를 본 교회 목사로 받겠습니까?
- ②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를 복종하기로 승낙하십니까?
- ③ 목사가 수고할 때에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할 때에는 도와주기로 작정하십니까?
- ④ 여러분은 저가 본 교회 목사로 재직(在職)중에 한결같이 그 허락한 생활비를 의수히 지급(依數支給)하며 주

의 도에 영광이 되며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주기로 맹세하십니까?

- ⑤ 공포-내가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과 총회의 권위로 목사 ○○○씨를 본 교회 목사로
위임됨을 공포하노라.

이같이 서약을 마친 후에 회장이나 다른 목사가 신임 목
사와 교회에게 정중히 권면한 후에 축도로 폐식한다.

지교회의 위임목사 승계의 권한은 개척담임목사에게 있다.

제12조 임시 목사 권한

1.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노회 허락으로 조직한 교회나 미
조직 교회가 1년간 임시 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
기 후에는 다시 노회의 1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노
회 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
2. 교회 각 기관에 종사하는 목사는 지교회 위임 목사가 될
수 없고 임시로 시무할 수 있다.

제13조 다른 교파의 교역자

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장로교회에 속한 노회
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본 교단 신학교 및 대학원에서
1년이상 수업한 후 강도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한국 이외
에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목사도 같은 예로 취급한다. 또한
본장 10조에 규정한 각항의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 6 장 목사 전임(傳任)

제1조 전임 승인

목사는 노회의 승낙을 얻지 못하면 다른 지교회에 이전하지 못하고 또 전임 청빙서를 직접 받지 못한다.

제2조 본교회 소속 전임

어떤 교회든지 본 노회에 속한 다른 지교회의 위임 목사를 청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회의 결의로 청빙서와 청원서를 노회 개회 1개월 전에 노회 서기에게 송달(送達)하고 노회 서기는 그 청빙 사유(事由)를 청빙 받은 목사나 그 교회에 즉시 통지할 것이요 본교회는 청빙 위원을 노회에 파송한다.

1. 그 위원은 청빙 이유를 노회에 진술한 후에 노회가 합당치 않는 줄로 알면 청빙서를 회수하고 합당한 줄로 알면 승낙하고 청빙서를 청빙 받은 자에게 준다.
2. 노회는 양편 교회 대표자의 설명을 듣고 교회의 평화와 덕을 세우도록 자세히 살펴 결정한 후에 유임(留任) 혹은 전임하되 처결하기 어려우면 상회의 지도를 구한다.

제3조 다른 노회 소속 전임

어느 교회든지 다른 노회에 속한 위임목사를 청빙하려면 본노회에 제의할 것이니 본 노회가 승낙할 때는 청빙서를 그 노회에 보낸다.

본노회는 청빙 받은 목사나 그 교회에 조회(照會)하여 회보(回報)를 받아 협의하여 가결되면 전임을 허락하고 본교회의 직무를 해제(解除)한 후 이명 증서를 피빙(被聘)자에게

주어 그 노회에 전달할지니 노회는 이명 증서를 접수한 후에 편의대로 위임한다. 그러나 목사가 싫어할 때에는 노회가 전임(轉任)을 명하지 못한다.

제 7 장 목사 사면 및 사직

제1조 자유 사면

목사가 본교회에 대하여 어려운 사정이 있어 사면원을 노회에 제출하면 노회는 교회 대표를 청하여 그 목사의 사면 이유를 물을 것이니 그 교회 대표가 오지 아니하든지 혹 그 설명하는 이유가 충분하지 못하면 사면을 승낙하고 회의록에 자세히 기록할 것이요 그 교회는 허위 교회가 된다.

제2조 권고 사면

지교회가 목사를 환영하지 아니하여 해약하고자 할 때는 노회가 목사와 교회 대표자의 설명을 들은 후 처리한다.

제3조 자유 사직

목사가 그 시무로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할 줄로 느꼈을 때는 사직원을 노회에 제출할 것이요 노회는 이를 협의 결정한다.

제4조 권고 사직

목사가 성직에 상당한 자격과 성적이 없든지 심신(心身)이 건강하고 또 사역할 곳이 있어도 5년간 무임으로 있으면 노회는 사직을 권고한다.

제5조 목사의 휴양

시무 목사가 신체 섭양(攝養)이나 신학 연구나 기타 사정으로 본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에는 본 당회와 협의하여 2개월 이상 흠근(欠勤)하게 될 때는 노회의 승낙을 요하고 1개년이 경과할 때는 자동적(自動的)으로 그 교회 위임이 해제된다.

제 8 장 선교사

제1조 선교사

총회는 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내외(內外)지를 물론하고 다른 민족에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으나 이런 일을 위하여 노회에 위탁하여 지교회의 청빙이 없는 이라도 선교사로 임직할 수 있으나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강권하지 못하고 자원하는 자라야 파송함이 옳고 선교사의 사례금과 기타 비용은 파송하는 지리회가 담당한다.

제2조 외국 선교사

외국 선교사는 곧 본총회와 관계있는 선교사를 가리킨다.

1. 외국 장로파 선교사가 본총회 관하(管下) 노회 구역 안에서 선교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선교사는 이명 증서를 그 노회에 제출하여 접수한 후에야 그 노회의 회원이 된다.
2. 각 노회는 이명 증서를 받은 선교사에 대하여 지교회 일

- 을 맡긴 때에만 그 노회에서 가부 투표권이 있다.
3. 본노회가 직무를 부담하게 아니한 선교사와 파견 증서만 받은 선교사는 투표권은 없으나 언권이 있고 위원회에서 는 투표권도 있고 상회 총대권도 있다.
 4. 본총회 관하 노회에서 파견 증서로 시무하는 선교사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율례를 준행할 의무가 있으니 만일 도덕상 품행에 관한 범과(犯過)나 본 신경, 정치, 성경에 위반되는 때는 소관 노회가 심사한 후에 언권회원권을 탈제(奪除)한다.
 5. 외국 선교사는 본총회에서 정한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6. 외국 선교에 대한 서약문
 - ① 사도신경을 성경 말씀의 진리를 옳게 진술한 것으로 알며 또 그대로 믿습니까?
 - ②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12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게요 및 대소 요리 문답을 정당한 것으로 믿습니까?
 - ③ 귀하는 신학상으로 말하는 신신학 및 고등비평이나 신정통주의 내지 자유주의 신학을 잘못된 것으로 알며 역사적 기독교의 전통을 항시 이와 투쟁적인 처지에서 진리를 수호해야 하는 줄 생각하십니까?
 - ④ 귀하는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헌법에 배치되는 교 훈이나 행동을 하지 않기로 서약하십니까?
 - ⑤ 귀하는 신앙보수는 의논이나 체계적 뿐만 아니라 그 생활도 응분적이어야 할 줄 알며 따라서 우리 총회의 음주 흡연 및 속된 생활 등을 금하는 의도를 잘 이해

하며 잘 순응하겠습니까?

- ⑥ 귀하는 본총회 산하 노회 및 기관에서 봉직하는 동안 소속 치리회에 복종하며 순종하기로 맹세하십니까?

제 9 장 치리 장로(長老)

제1조 장로직의 기원

율법시대에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있음과 같이 복음시대에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를 세웠으니 곧 치리장로이다.

제2조 장로의 권한

강도와 교훈은 그의 전무 책임은 아니나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항 사무를 처리한다(딤펴전 5:17, 롬 12:7~8).

제3조 장로의 자격

만30세 이상된 남녀 중 입교인으로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딤펴전 3:1~7절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4조 장로의 직무

1.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치리장로는 교인의 택함을 받고 교인의 대표자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지교회 혹은 전국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2. 도리 오해(道理誤解)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주께 부탁받은 양무리가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 당회로나 개인으로 선히 권면하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당회에 보고한다.

3. 교우를 심방하여 위로, 교훈, 간호한다.

교우를 심방하되 특별히 병자와 조상자(遭喪者)를 위로하며 무식한 자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며 간호할 것이니 평신도보다 장로는 신분(身分)상 의무와 직무(職務)상 책임이 더욱 중하다.

4.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장로는 교인과 함께 기도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교인 중에 강도의 결과를 찾아 본다.

5. 특별히 심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병환자와 슬픔을 당한 자와 회개하는 자와 특별히 구조 받아야 할 자가 있을 때에는 목사에게 보고한다.

제 10 장 권 사

제1조 권사

권사직은 목사와 장로직과 구별되는 직분이니 무흠한 입교인으로서 지교회의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인수(按手)임직을 받는 교회의 항존(恒存)직이다.

제2조 권사의 자격

여신도중 만35세 이상으로 다년간 교회에 봉사하고 진실

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숭(尊崇)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될만한 서리집사 중에서 선택한다.

제3조 권사의 직무

당회의 지시대로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자와 곤란을 당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교인을 돌아보아 권면하고 살피는 일을 한다 (딤후 3:1~13).

제 11 장 집 사

제1조 집사직(職)

집사직은 목사와 장로직과 구별되는 직분이니 무흠한 남·여 입교인으로 그 지교회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按手) 임직을 받는 교회의 항존(恒存)직이다.

제2조 집사의 자격

집사는 만30세 이상된 남·여 입교인으로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숭(尊崇)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만한 자 중에서 선택한다. 봉사적 의무는 일반 신자의 마땅히 행할 본분(本分)인즉 집사된 자는 더욱 그러하다(딤후 3:8~13).

제3조 집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협력(合力)하여 빈핍 곤궁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

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
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收納支出)한다 (행
6:1~3).

제 12 장 장로, 권사, 집사 선거 및 임직

제1조 선거 방법

치리 장로와 권사 및 집사는 각 지교회가 공동의회 규칙
에 의하여 선거하되 투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2조 임직 승낙

치리장로 혹은 권사 및 집사를 선거하여 총회가 고시 승
인하고 (권사 및 집사는 제외한다) 선거된 본인도 승낙한 후
에 당회가 임직한다.

제3조 임직 순서

교회가 당회의 정한 날짜와 장소에 모여 개회하고 목사가
강도한 후에 그 직임(장로 혹 권사 및 집사)의 근원과 성질이
어떠한 것과 품행과 책임이 어떠한 것을 간단히 설명하
고 교회 앞에서 피선(被選)자를 기립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1.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正確無誤)한 유일(唯一)의 법칙으로 믿
습니까?
2.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 요리

문답을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중하십니까?

3.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십니까?
4. 이 지교회 장로(혹 권사 및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 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本職)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5. 장로(혹 권사 및 집사)로 안수받고 교회와 당회에 대하여 장로(권사 및 집사)의 의무를 다하며 교회와 당회에 복종하며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전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피선(被選)자가 각 묻는 말에 대하여 서약한 후에 목사는 또 본 지교회 회원들을 기립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이 지교회 회원들이여 ○○씨를 본 교회의 장로(혹 권사 및 집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를 좇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맹세하십니까?

교회원들이 거수로써 승낙의 뜻을 표한 후에 목사가 개인 으로나 전 당회로 안수와 기도하고 피선자를 치리장로(혹 권사 및 집사)의 직을 맡긴 다음 악수례를 행하고 공포한 후 새로이 임직한 자와 교인에게 대하여 특별히 합당한 말로 권면한다.

제4조 임 기

치리장로 권사 및 집사직은 항존(恒存)직이다.

단 3년에 1차씩 시무 투표할 수 있고 그 표결수는 과반수

를 요한다.

제5조 자유 휴직과 사직

장로 혹은 권사 및 집사가 노혼(老昏)하거나 신병으로 시무를 할 수 없든지 이단이나 악행(惡行)은 없을지라도 교회원 태반이 그 시무를 원하지 아니할 때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휴직과 사직을 당회의 결의로 처리한다.

제6조 권고 휴직과 사직

장로나 권사 및 집사가 범죄는 없을지라도 전조(前條) 사건과 방불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당회가 협의 결정하여 휴직 혹은 사직하게 하고 그 사실을 회의록에 기록한다.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상소할 수 있다.

제 13 장 목사 후보생과 강도사

제1조 양성의 요의(要義)

목사의 중임을 연약하고 부적당(不適當)한 자에게 위임하므로 성역(聖役)이 사람의 멸시됨을 면하기 위하여 또한 교회를 교도(敎道) 치리 할 자의 능력을 알기 위하여 성경에 명한 대로 목사지원자를 먼저 시험하는 것이 가하다 (딤후 3:6, 딤후 2:2). 이따라서 총회가 신학 졸업생을 전도사로 고시하고 총회가 강도사고시 후 강도사로 인허 받고 그 강도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총회고시 합격 후 노회 지도

아래서 본직의 경험을 수양한 후에야 목사 고시에 응할 수 있다.

제2조 관 할

목사 후보생 지원자는 소속 본노회에 청원하여 그 노회관 하에서 양성을 받는다.

1. 혹 편의(便宜)를 인하여 멀리 있는 다른 노회 아래서 양성을 받고자 하면 본노회 혹 본노회 관할 아래 있는 무흠 목사 2인의 천서를 얻어 그 노회에 제출한다.
2. 천서는 그 사람의 무흠 교인된 것과 모범적 신앙과 기타(其他) 목사됨에 합당한 자격 유무(有無)를 증명한다.
3. 누구든지 총회가 인정하는 어느 신학교에 입학코자 할 때에는 마땅히 본노회에 청원을 제출하여 노회 관할 아래 속한 목사 후보생이 되고 대한 예수교 장로회 노회의 지도 아래서 수양받지 아니한 자는 신학 졸업 후 노회 관할 아래 후보생으로 1년간 총회 신학교에서 신학과 교회 헌법을 수업한 후에 강도사 고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제3조 강도사 고시 및 인허

강도사 인허를 청원하는 자는 반드시 총회가 그 덕행(德行)이 단정함과 지교회의 무흠 회원됨을 증명하는 당회 증명과 노회 추천서 및 지원서와 이력서를 제출하게 할 것이요 총회는 그 사람의 신덕과 종교상 이력을 시문(試問)하며 성역(聖域)을 구하는 이유를 묻되 그 고시는 신중히 하고 인허는 총회가 한다.

제4조 고시 종목

고시는 구두(口頭)와 필기 2종이 있으니 그 과목은 아래와 같다.

조직신학, 교회헌법, 교회사, 논문, 주해(註解), 강도. 고시부장은 강도사 지원자의 실지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고시 5개월 전에 아래와 같은 고시 문제를 준다.

논문, 주해(註解), 강도.

제5조 인허 서약

총회는 강도사 인허할 자에게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1.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2.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 요리문답을 신구약 성경에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자기의 사용할 것으로 승낙하십니까?
3.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도모하기로 맹세하십니까?
4. 주 안에서 본 노회 치리를 복종하고 다른 노회에 이거할 때는 그 노회의 치리를 복종하기로 맹세하십니까?

제6조 인 허 식

그 지원자가 전조와 같이 서약한 후에 회장이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신 권세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하시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대에게 강도사 인허를 주고 이 일을 선히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스도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제7조 인허 후 이전

강도사 인허를 받은 후에 소속 노회 허락을 얻어 다른 노회 지방에 이거하게 되면 강도사 이명 증서를 받아 그 노회에 제출한다.

제8조 인허 취소

강도사가 4년간 강도하는데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회는 결의에 의하여 인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제 14 장 교회 예배 의식(儀式)

교회는 마땅히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설립하신 예배 의식을 준수(遵守)할지니 그 예배는 아래와 같다.

1. 기도 (행 6:4, 딤후 2:1)
2. 찬송 (골 3:16, 4:6, 시 9:11, 엡 5:19)
3. 성경 낭독 (행 15:21, 눅 4:16~17)
4. 성경 해석과 강도 (딤후 1:9, 행 9:20, 10:4, 눅 24:47, 딤후 4:2)
5. 세례 (마 28:19~20, 막 16:15~16)
6. 성찬 (고전 11:23, 28)
7. 금식과 감사 (눅 5:35, 빌 4:6, 딤후 2:1, 시 50:14, 시 95:2)
8. 성경 문답 (히 5:21, 딤후 3:14, 17)
9. 헌금 (행 11:27, 30, 고전 16:1~14, 갈 2:10, 6:6)

10. 권징(勸懲) (히 13:17, 살전 5:12~13, 고전 5:4~5, 딤후 1:20, 5:12)
11. 축복 (고후 13:13, 엡 1:2)

제 15 장 교회 정치와 치리회

제1조 정치의 필요

교회를 치리함에는 명백한 정치와 조직이 있어야 한다.
(고전 14:40).

정당한 사리(事理)와 성경 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行事)에 의지한 즉 교회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같은 치리회에 있다 (행 15:6).

제2조 치리회의 성질과 관할

교회 각 치리회에 등급(等級)은 있으나 각회 회원은 목사
와 장로 뿐이므로 각회가 다 노회적 성질이 있으며 같은 자
격으로 조직한 것이므로 같은 권리가 있으나 그 치리의 범
위는 교회 헌법에 규정하였다.

1. 교회의 교리와 정치에 대하여 쟁론(爭論) 사건이 발생하
면 성경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성취하기 위하
여 순서에 따라 상회에 상소함이 가하며 각 치리회는 각
사건을 적법(適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범위를 정
할 것이요, 각회(各會)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서대로
상회의 검사와 관할을 받는다.

2. 각 치리회는 각립(各立)한 개체가 아니요 서로 연합한 것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치결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행사하게 하는 것인즉 전국 교회의 결정이 된다.

제3조 치리회의 회집

당회와 노회는 매년 1년 이상, 대회와 총회는 매년 1회 회집하되 기도로 개회와 폐회한다.

제4조 치리회의 권한

교회 각 치리회는 국법상 시벌(施罰)을 과(科)하는 권한이 없고 (눅 12:2~14, 요 18:36) 오직 도덕과 신령상 사건에 대하여 교인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하게 하는 것 뿐이다 (행 15:1~2). 만일 불복하거나 불법한 자가 있으면 교인의 특권을 향유(享有)하지 못하게 하며 성경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합(收合)하여 시벌하며 교회 정치와 규례(規例)를 범한 자를 소환하여 심사하기도 하며 관할 아래에 있는 교인을 소환하여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도 있으니 가장 중한 벌을 교리에 패역한 자와 회개하지 아니한 자를 교인 중에서 출교할 뿐이다 (마 18:15~17, 고전 5:4~5)

제 16 장 당 회

제1조 당회의 조직

당회는 지교회 목사와 치리장로로 조직하되 세례 교인 25

인 이상을 요한다 (행 14:23, 딤후 1:5).

제2조 당회의 성수

당회에 장로 2인이 있으면 장로 1인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장로 3인 이상이 있으면 장로 과반수와 목사 1인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된다. 장로 1인만 있는 경우에도 모든 당회 일을 행하되 그 장로 치리 문제나 다른 사건에 있어 장로가 반대할 때에는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제3조 당회장

당회장은 그 지교회 담임목사가 될 것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 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본교회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에도 그러하다.

제4조 당회 임시 회장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될 때마다 임시 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장 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과 중대 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당회의 직무

1.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당회의 직무는 신령상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니 (히 13:17) 교인의 지식과 신앙 상 행위를 총찰한다.
2. 교인의 입회와 퇴회-학습과 입교할 자를 고시하며 입교

인 된 부모를 권하여 그 어린 자녀로 세례를 받게 하며 유아 세례받은 자를 고시하여 성찬에 참여하게 하며 주소 변경한 교인에게는 이명증서(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를 접수 또는 교부(交附)하며 제명도 한다.

3. 예배와 성례 거행-목사가 없을 때에는 노회의 지도로 다른 목사를 청하여 강도하게 하며 성례를 시행한다.
4. 장로와 집사 임직-장로나 집사를 선택하여 만년 이상 교양하고 장로는 노회의 승인과 고시 후에 임직하며 집사는 당회가 고시한 후에 임직한다.
5. 각항 헌금 수집하는 일을 주장-각항 헌금 수집할 날짜와 방침을 작성한다.
6. 권징하는 일-본교회 중 범죄자와 증인을 소환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교회 회원이 아닌 자라도 증인으로 소환 심문할 수 있고 범죄한 증거가 명백한 때에는 권계(勸誡), 견책(譴責), 수찬정지(修餐停止), 제명(除名), 출교(黜敎)를 하며 회개하는 자를 해별한다 (살전 5:12~13, 살후 3:6, 14~15, 고전 11:27~30).
7.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당회는 교회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교인을 심방하고 성경 가르치는 일과 주일 학교를 주관하며 전도회와 면려회와 각 기관을 감독한다.
8. 노회에 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보고-노회에 파송할 총대 장로를 선정하며 청원을 제출하며 교회 정황을 노회에 보고한다.

제6조 당회의 권한

당회는 예배 모범에 의지하여 예배 의식을 전관하되 모든 회집 시간과 처소를 작정할 것이요,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掌理)한다.

제7조 당회 회집

당회는 1년 1회 이상을 정기회로 회집하며 본교회 목사가 필요한 줄로 인정할 때와 장로 반수(半數) 이상이 청구할 때와 상회가 회집을 명할 때에도 소집하되 만일 목사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응하여 장로 과반수(過半數)가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당회 회의록

당회회의록에는 결의 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회의록과 재판 회의록은 1년 1차씩 노회 검사를 받는다.

제9조 각종 명부록

당회는 아래와 같은 명부록을 비치(備置)한다.

1. 학습인 명부 (학습 년 월 일 기입)
2. 입교인 명부 (입교 년 월 일 기입)
3. 책별 및 해별인 명부 (책별, 해별 년 월 일 기입)
4. 별 명부 (1년 이상 실종된 교인)
5. 별세인 명부 (별세 년 월 일 기입)
6. 이전인 명부 (이명서 접수 및 발송 년 월 일 기입)
7. 혼인명부(성혼 년 월 일 기입)
8. 유아세례 명부(세례 및 성찬 허락 년 월 일 기입)

성명은 호적대로 기록하되 여자와 아이는 친족의 성명도

가입한다.

제10조 연합 당회

도시에 당회가 2개 이상 있으면 교회 공동 사업의 편리를 위하여 연합 당회를 조직할 수 있으나 그 회원은 각 당회원으로 하며 본회는 치리권은 없으나 협동 사무 기타(其他) 교회 유익을 서로 도모할 수 있다.

제 17 장 노 회

제1조 노회의 요의(要義)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뉘어 여러 지교회가 되었으니 (행 6:1~6, 9:31, 21:20) 서로 협의하여 도우며 교회 도리의 순전을 보전하며 권징을 동일하게 하며 신앙상 지식과 바른 도리를 합심하여 발휘(發揮)하며 배도(背道)함과 부도덕(不道德)을 금지할 것이요, 이를 성취하려면 노회와 같은 상회(上會)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 (사도 시대 교회와 같은 회가 있었나니 교회가 분산한 후에 다수의 지교회가 있는 것은 모든 성경에 확연하다)(행 6:1, 9:31, 21:20, 행 2:41~47, 4:4). 이런 각 교회가 한 노회 아래 속하였고 (행 15:2~4, 6:11, 23~30, 21:17~18, 25~31, 36~37, 계 2:1~6) 에베소교회 외에도 많은 지교회가 있고 노회가 있는 증거가 있다.(행19:18, 20) 비교(교전16:8, 9, 19, 행18:19, 24~26, 20:17~18, 25~31, 36~37, 계2:1~6)

제2조 노회 조직

노회는 일정한 지방 안에 모든 목사(5인 이상을 포함)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

제3조 회원 자격

각 지교회 시무목사와 원로목사와 공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이 구비되고 그밖에 목사는 투표권이 없고 위원회에서는 투표권과 상회에 총대권도 있다.

제4조 총 대

총대장로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제5조 노회의 성수

노회가 예정한 장소와 날짜에 본노회에 속한 정회원되는 목사와 총대 장로 각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최할 성수가 되나니 노회의 일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6조 노회의 직무

1. 노회는 그 구역에 있는 당회와 지교회와 목사와 강도사와 전도사와 목사 후보생과 미조직 지교회를 총찰한다.
2. 노회는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소 및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며 재판건은 노회의 결의대로 권징 조례에 의하여 재판국에 위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고전 6:1, 딤편 5:19). 상소장을 접수하여 상회에 보낸다.
3. 당회록과 재판회의록을 검열하여 처리 사건에 찬부(贊否)

를 표하며 도리와 권징에 관한 합당한 문의를 해석한다 (행 15:10, 갈 2:2~5).

4. 교회의 신성과 화평을 방해하는 언행을 방지하며 (행 15:22, 24) 교회 실정과 폐해(弊害)를 감시하고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각 지교회를 시찰한다 (행 20:17, 30, 6:2, 15:30).
5.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를 조직하는 것과 지교회와 미조직 교회의 목사의 청빙과 전도와 학교와 재정일체 사항의 처리 방침을 지도 방조한다.
6. 본노회의 청원과 헌의를 상회에 올려 보내며 상회에서 내려 보내는 공함(公函)을 접수하여 그 지회를 봉행하며 교회 일을 질서 있게 처리하며 (고전 14:33, 40) 전도 사업을 직접 경영함과 상회 총대를 선정 파송함과 범사(凡事)에 관한 각 교회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7. 어느 지교회에 속한 것을 물론하고 토지 혹은 가옥 사건에 대하여 변론이 나면 총회가 처단할 권한이 있다.
8. 노회는 교회를 감독하는 처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소속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시찰 위원을 선택하여 지교회 및 미조직 교회를 순찰하고 모든 일을 협의하여 노회의 처리하는 것을 보조할 것이니 위원의 정원과 시찰할 구역은 노회에서 작성한다. 시찰 위원은 처리회가 아니니 목사 청빙 청원을 가납(加納)하거나 목사에게 직전(直前)하지 못하고 노회가 모이지 아니하는 동안 임시 목사라도 택하여 세울 권한이 없다. 그러나 허위 당회에서 강

도할 목사를 청하는 일을 같이 의논할 수 있고 또 그 지방의 목사와 강도사의 일할 처소와 봉급에 대하여 경영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9. 노회는 허위 교회를 돌아보기 위하여 시찰위원 혹은 특별 위원에게 위탁하여 노회 개회 때까지 임시로 목사를 택하게 할 수 있고 혹 임시 당회장도 택하게 할 수 있다. 시찰위원을 두고 목적은 교회와 당회를 돌아보고 노회를 위하여 교회 형편을 시찰하는 것이니 시찰위원은 교회의 청함이 없을지라도 그 지방 안에 있는 당회와 연합당회와 제직회와 부속한 각회에 언권 방청원으로 출석할 수 있고 투표권은 없다. 각 당회는 장로 및 전도사를 선정할 일에 대하여 의논할 때에는 시찰회와 협의함이 가하다. 시찰위원은 그 구역 안 교회 형편과 위탁받은 사건을 노회에 보고할 것이나 당회나 교인이 교회 헌법에 의하여 얻은 직접 청구권은 침해하지 못한다.

10. 시찰위원은 가끔 각 목사와 교회를 순찰하여 교회의 신령상 형편과 재정 형편과 전도 형편과 주일 학교 및 교회소속 각회 형편을 시찰하고 목사가 결과 있고 유익하게 역사하는 여부와 그 교회 장로와 당회와 제직회와 교회 대표자들의 제출하는 문의(問議) 및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한다.

제7조 노회회의록과 보고

노회는 목사와 강도사 및 전도사의 이명과 별세(別世)와 후보생의 명부와 교회 설립 분립(分立) 합병과 지방 안의 각

교회 정황(情況)과 처리하는 일반 사건을 일일이 기록하여 매년 상회에 보고한다.

제8조 노회가 보관하는 각종 명부

- (1) 시무 목사 (2) 무임 목사 (3) 원로 목사 (4) 공로 목사
- (5) 전도사 (6) 목사 후보생 (7) 강도사

제9조 노회 회집

노회는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 회집하고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각 다른 지교회 목사 3인과 각 다른 지교회 장로 3인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장이 유고한 때는 부회장 또는 서기가 대리 소집한다).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會議)할 안건과 회집 날짜를 개회 10일 선기(先期)하여 관하(管下) 각 회원에게 통지하고 통지서에 기재한 안건만 의결(議決)한다.

제 18 장 대 회

제1조 조 직

대회는 1지방 안 모든 노회(3개 이상 노회 됨을 요한다)를 관할하는 회니 각 노회에서 파송하는 총대 목사와 장로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서로 같게 한다.

단 1 당회에 총대 목사, 장로 각 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조 개회 성수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 목사 7인과 장로 3인 이상이 회집

하면 개회 성수가 된다.

제3조 언권 방청

다른 노회 목사나 또는 서로 교통하는 교파 목사를 언권 방청원으로 허락할 수 있다.

제4조 대회 권한과 직무

1. 노회 판결에 대한 공소 및 상고를 수리 처결한다.
2. 모든 하회의 문의에 대하여 결정 지시권이 있다.
3. 각 노회록을 검사 인준한다.
4. 각 노회에 법규(法規)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교정하게 하고 교회 헌법을 잘 준수하게 한다.
5. 노회를 설립, 합병, 분설(分設)하며 노회 구역을 변경하는 일을 행할 수 있다.
6. 교회의 건덕(健德)과 유익될 일을 각 교회에 권장하며 총회에 헌의할 수 있다.
7. 대회는 고소, 소원, 공소, 상고에 대한 결정을 전권으로 행하되 직접 판결하든지 또는 하회에 반환할 수 있다.
8. 대회에 제기한 상고, 고소, 문의의 안건이 교회의 도리나 헌법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면 대회가 최종 심의(最終審議)회가 된다.
9. 당회는 교인을 직접, 노회는 목사를 직접 재판할 수 있으나 대회는 노회에서 판결한 데 대하여 불복 상고한 것이나 노회에서 제출한 문의 같은 문서(文書)를 받은 후에야 재판할 수 있다.
10. 대회가 하회(下會)에 대하여 만일 불법한 사건이 있는

줄로 아는 때는 상고하는 일이 없을지라도 자세히 조사하며 하회의 회의록을 검사하여 과연 사실이 있으면 심사 교정하든지 하회에 명령하여 교정하게 한다.

11. 대회는 재판국을 두어(국원은 목사 장로 9인 이상) 권징 조례대로 재판한다. 재판국 개회성수는 국원 4분의 3이상이 출석하여야 개심하며 재판국 판결은 법규에 대한 사건외에는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대회가 직접재판회로 다시 일일이 재판한 후에 재판국 판결을 변경할 수 있다.

12. 대회는 총회에 헌의와 청원을 제출할 수 있고 다른 노회나 대회의 헌의에 대하여 동의(同意)를 표할 수 있다.

제5조 대회회집

대회는 매년 1회 정기회로 회집하고 필요한 때는 임시회와 계속회도 할 수 있다. 임시회는 2개 노회의 목사장로 각 3인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한다. 임시회는 개회 10일 전기하여 회집 통지서와 의안을 관하 각 회원에게 통고하고 통지(通知)서에 기재한 안건만 의결(議決)한다.

제6조 회의록 및 보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특별히 재판 기록을 자세히 하여 총회의 검사를 받으며 대회 상황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 19 장 총 회

제1조 총회의 정의(定義)

총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最高會)니 그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라 한다.

제2조 총회의 조직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서 조직한다.
그 수는 별도로 하달 지시한다.

제3조 총회의 성수

총회가 예정한 날자에 노회에 과반수와 총대 목사장로 각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할 성수가 되어 일반 회무를 처리한다.

제4조 총회의 직무

총회는 소속 교회 및 치리회의 모든 사무와 그 연합 관계를 총찰하며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각 하회록을 검열하여 찬부를 표하고 관하 각 교회 간에 서로 연락하며 교통하며 신뢰(信賴)하게 한다.

제5조 총회의 권한

1. 총회는 교회 헌법(신조, 요리 문답, 정치, 권징조례, 예배 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고 교리(敎理)와 권징에 관한 쟁론(爭論)을 판단하고 지교회와 노회의 오해와 부도덕(不道德)한 행위를 경책하며 권계(勸誡)하며 변증(辯證)한다.

2. 총회는 노회, 대회를 설립합병 분립하기도 하며 폐지하는 것과 구역을 작정하며 강도사 지원자를 고시하며 전국 교회를 통솔하며 본총회와 다른 교과 교회 간에 정한 규례에 의하여 교통한다.
3. 교회를 분열(分裂)하게 하는 쟁단(爭端)을 진압하며 전교회(全教會)를 위하여 품행을 단정하게 하고 인애(仁愛)와 성실과 성결한 덕을 권장하기 위하여 의안(議案)을 제출하여 실행하도록 계도(計圖)한다.
4. 어느 교회에서든지 교회 재산에 대하여 쟁론이 있어 노회가 결정한 후 총회에 상고하면 이것을 접수하여 판결한다.
5. 내외지 전도 사업이나 기타 중대 사건을 주관할 위원을 설치(設置)할 수 있으며 신학교와 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6. 총회의 재산은 총회 소유로 한다.

제6조 총회 회집

총회는 매년 1회 정례로 회집하되 예정한 날짜에 회장이 출석하지 못할 때는 부회장 혹 회장이 개회하고 신회장을 선거할 때까지 시무할 것이요 각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呼名)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제7조 개회 폐회 의식(儀式)

총회가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하되 결정한 후에는 회장이 선언하기를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세로 지금 총회는 파(罷)함이 가한 줄로 알며 이 총회 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아무날 아무곳에서 회집함을 요하노라」 한 후에 기도함과 감사함과 축도로 산회(散會)한다.

제 20 장 총회 총대

제1조 총회 총대 자격

1. 총회 총대는 총회 전 정기노회에서 선택할 것인데 총회 개회 6개월 이상을 격하여 택하지 못한다.
2. 새로 조직한 노회의 총대는 개회 후 임원 선거 전에 그 노회 설립 보고를 먼저 받고 총대로 허락한다.
3. 총대될 장로 자격은 그 회에 속한 위임장로와 휴직장로다.

제2조 총대 교체

총회 원총대가 출석하였다가 자기 임의로 부총대와 교체하지 못할 것이니 부득이한 때에는 총회의 허락으로 부총대와 교체할 수 있다.

제3조 언권 회원

1. 본총회의 파송으로 외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
2. 파견 증서만 가지고 와서 본총회 산하에서 선교에 종사하는 외국선교사
3. 본총회의 증경 총회장

제4조 총대 여비

총대 여비는 총회에서 지급하며 총회 총대는 1당회에서

목사 장로 각 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1당회에서 목사 2인 이상이나 장로 2인은 불가하다.)

제 21 장 회장과 서기

제1조 회 장

교회 각 처리회는 모든 사무를 질서 있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을 선택할 것이요 그 임기는 그 회의 규칙 대로 한다.

제2조 회장의 직권

회장은 그 회가 허락하여 준 권한 안에서 회원으로 회칙을 지키게 하고 회의석의 질서를 정돈하며 개회, 폐회를 주관하고 순서대로 회무를 지도하되 잘 의논한 후에 신속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각 회원이 다른 회원의 언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며 회장의 승낙으로 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게 하되 의안(議案) 범위 밖에 탈선하지 않게 하고 회원 간에 모욕 혹은 풍자적 무례한 말을 금하며 회무 진행 중에 퇴장을 금하며 가부를 물을 의제(議題)는 회중에 밝히 설명한 후에 가부를 표결할 것이요 가부 동수인 때는 회장이 결정하고 회장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그 안건은 자연히 부결된다. 회장은 매 사건에 결정을 공포할 것이요 특별한 일로 회의 질서를 유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비상 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

제3조 서기

각 치리회는 그 회의록과 일체 문부를 보관하기 위하여 서기를 선택하되 그 임기는 그 회의 규칙대로 한다.

제4조 서기의 임무

서기는 회중 의사 진행을 자세히 기록하고 일체 문부, 서류를 보관하고 상당한 자가 회의록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 등본을 청구하면 회의 허락으로 등본하여 줄 수 있다. 서기가 날인한 등본을 각 치리회는 원본과 같이 인정한다.

제 22 장 의 회

제1조 공동 의회

1. 회원

본교회 무흠 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이 있다.

2. 소집

공동의회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이상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3. 임원

지교회의 당회장과 당회 서기는 공동 의회의 회장과 서기를 겸한다.

당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임시 회장을(본 노회 목사 중) 청할 것이요 회의록은 따로 작성(作成)하여 당

회 서기가 보관한다.

4. 회집

당회는 개회할 날짜와 장소와 의안(議案)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작성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회집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에 다시 회집한다.

5. 회의(會議)

연말 정기 공동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 상황을 들으며 제직회와 부속 각 회의 보고와 교회 경비 결산과 예산서를 채용하며 그 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하거나 일반 의결은 과반수로 하되 목사 청빙 투표에는 투표수 3분의 2의 가와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하며 장로 집사 및 권사 선거에는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가로 선정한다.

제2조 제 직 회

1. 조직

지교회 당회원과 집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한다. 회장은 담임목사가 겸무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 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의하여 제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리 집사와 전도사와 권사 전도인에게 제직회원 권리를 줄 수 있다.

2. 미조직 교회 제직회

미조직 교회에서는 목사, 전도사, 권사, 서리 집사, 전도인들이 제직회 사무를 임시로 집행한다.

3. 재정 처리

- ①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한다.
- ② 구제와 경비에 관한 사건과 금전 출납(出納)은 모두 회에서 처리하며 회계는 회의 결의에 의하여 금전을 출납한다.
- ③ 제직회는 매년말 공동 의회에 1년간 경과 상황과 일반 수지(收支) 결산을 보고하며 익년도(翌年度) 교회 경비 예산을 편성 보고하여 회에 통과하며 회계는 장부의 검사를 받는다.

4. 제직회 개회 성수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성수가 되며 사건이 경미하고 긴급한 일은 성수가 못되어도 임시 결정하고 그 후 본회에 보고하여 승낙을 받는다.

5. 정기회

매월 1회 또는 1년에 4회 이상 정기회를 정함이 편하다.

제 23 장 교회 소속 각 회의 권리 및 책임

제1조 속회(屬會) 조직

지교회나 혹 여러 지교회가 전도 사업과 자선 사업이나 도리를 가르치는 것과 은혜 중에서 자라기 위하여 여러 가지 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2조 속회 관리

어느 지교회든지 위에 기록한 대로 여러 회가 있으면 그 교회 당회의 치리와 관할과 지도를 받을 것이요 노회나 대회나 온 총회 지정 안에 보급(普及)하게 되면 그 치리회 관할 아래 있다.

당회원이나 다른 직원으로 각 기관에 고문을 정하여 연락 지도할 수 있다.

제3조 속회 권한

이런 각회가 그 명칭과 규칙을 제정하는 것과 임원 택하는 것과 재정 출납하는 것을 교회 헌법에 의하여 그 치리회의 검사와 감독과 지도를 받는다.

제 24 장 헌법 개정

제1조 정치, 권징 조례, 예배 모범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는 각 노회에 수의하여 노회 과반수와 모든 노회의 투표 수 3분의 2이상의 가표를 받은 후에 변경할 것이요 각 노회 서기는 투표의 가부를 총회 서기에게 보고하고 총회는 그 결과를 공포 실행한다.

제2조 신조와 요리 문답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는 그 의견을 제출하고 각 노회에 수의하여 노회 중 3분의 2와 모든 투표수 3분의 2의 가표를 받고 그 다음 회가 채용하여야 한다.

각 노회 서기는 투표의 가부수를 서면으로 총회 서기에게 보고한다.

제3조 총회는 신조와 요리 문답을 개정하는 의안(議案)을 각 노회에 보내기 전에 특별히 위원 15인 이상(목사와 장로)을 택하여 1년간 그 문제를 연구하게 한 후 총회때에 보고하도록 할 것이요 그 위원은 1 노회에 속한 회원 2인 이상됨을 금한다.

제4조 소속 노회 3분의1 이상이 헌법을 개정하자는 헌의를 총회에 제출하면 총회는 그 의안을 각 노회에 보내고 그 결정은 위의 제1, 제2조를 준용(準用)한다.

IV.헌법적 규칙

헌법적 규칙

제1조 미조직 교회 신설립

일정한 구역 안에 예배 장소를 준비하고 장년 신자 15인 이상 합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며 교회 신설(新設)을 원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하여 그 구역 시찰회 경유(經由)로 노회에 청원하여 인가를 받는다. 만일 신자가 15인 미만 되거나 예배 장소가 준비되지 못한 때에는 기도회 처소로 하여 부근 어느 교회의 도움을 받는다.

1. 신설 교회 위치, 2. 신설 년 월 일, 3. 장년 신자수와 가정수, 4. 유년 주일 학생수, 5. 예배당 형편(기지 평수 건물과 소유자), 6. 신설 교회의 명칭(동지역 동명 불허), 7. 교회 유지 방법, 8. 부근 교회와 그 거리(500m 이상), 9. 구역 가호(家戶)수 (도시는 제외).

제2조 교인의 의무

1. 교인은 교회의 정한 예배회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 집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2. 교인은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 발전에 전력하며 사랑과 선행(善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3. 교인은 교회의 경비와 사업비에 대하여 성심 협조하며 자선과 전도 사업과 모든 선한 일에 노력과 금전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4. 성경 도리를 힘써 배우며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

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 생활에서 나타내어야 한다.

5. 교회의 직원으로 성일(聖日)을 범하거나 미신(迷信) 행위나 음주 흡연(飲酒吸煙), 구타하는 등의 행동이나 고의(故意)로 교회의 의무(義務)금을 드리지 않는 자는 직임(職任)을 면(免)함이 당연하고 교인으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로 간주한다.
6. 교인은 진리(眞理)를 보수(保守)하고 교회 법규(法規)를 잘 지키며 교회헌법에 의지하여 처리함을 순히 복종하여야 한다.

제3조 교인의 권리(權利)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

1. 교인에게 교회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請願) 소원(訴願) 상소(上訴)할 권리가 있다.
2. 교인은 지교회에서 법규대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무고히 6개월 이상 본교회 예배회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
3. 무흠 입교인은 성찬에 참례하는 권한이 있다.
4.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분량(分量)에 따라 일할 특권이 있다.

제4조 주일 예배회

1. 조용히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며 단정하고 경건한 태도로 엄숙히 예배하여야 한다.
2. 이상한 동작과 경건하지 못한 태도로 찬송이나 찬양을

- 인도하여 예배의 신성함을 감손(減損)하게 하지 말 것.
3. 주일 예배 시간에는 예배와 성례 외에 다른 예식은 다른 날에 행하되 가급적 간단히 행함이 좋다.
 4. 주일 예배 시간에 어떤 개인(個人)을 기념, 축하, 위안, 치하하는 예배를 행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 여야 한다.
 5. 주일에 음식을 사먹거나 모든 매매하는 일은 하지 말며 연회나 세속적 쾌락을 삼가며 힘써 전도, 위문, 기도, 성경과 종교 서적 열람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어야 한다.
 6. 예배당 구내에 개인을 위하여 송덕비(頌德碑)나 공로기념 비나 동상 같은 것을 세우지 않는다.

제5조 학습(學習)

1.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 되고 믿은지 6개월이 경과되어 신앙이 독실한 자는 학습인 고시를 받을 자격이 있다.
2. 학습 서약문
 - 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는 하나님을 성심으로 신봉(信奉)하십니까?
 - ② 예수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 ③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를 힘쓰겠습니까?
 - ④ 주일을 거룩히 지키며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제6조 성례(聖禮)

1. 신앙이 독실하고 학습인으로 6개월간 근실히 교회에 출

석하면 세례 문답할 자격이 있다.

2. 만2세까지 유아(乳兒)세례를 줄 수 있으나 부모 중 한편만 믿어도 줄 수 있다.
3. 유아세례 받은 자가 만15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할 연령이 된다.
4. 교회가 성례를 1년에 2회 이상 거행함이 적당하고 성례 거행하기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하고 준비 기도회로 교인의 마음을 준비하게 한다.
5. 성찬으로 쓰고 남은 떡과 포도즙은 정한 곳에 묻거나 불에 태운다.

제7조 교회의 선거 투표

1. 선거 투표는 무흠 입교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밀히 할 것인데 교회에서나 어떤 회에서든지 투표하는 일에 대하여 사회에서와 같이 인위적(人爲的)으로 선거 운동을 하여 당선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돌리거나 방문 권유하거나 문서로나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하는 일을 금한다.

교회 직원을 선거함에 있어 병노(炳老) 여행(旅行)이나 그 외에 부득이한 사유(事由)외에 무고히 계속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선거와 피선거권이 중지된다.

2. 연기명(連記名) 투표에 있어 계표(計票)함에 대하여 투표 정원(定員) 수 이상을 기록한 표는 무효로 인정하고 정원 수 이내를 기입(記入)한 표는 유효(有效)표로 정한다.

3. 지정한 투표 용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백표나 잘못된 기록한 투표지는 무효표로 하되 잘못된 기록된 투표지는 총표수로 계산하고 백표는 총표수에 계입(計入)하지 않는다.

제8조 무임(無任)권사 및 집사

안수 받은 권사 및 집사가 다른 교회로 이거하여 무임 권사 및 집사인 경우에 그 교회가 투표로나 당회의 결의로나 서리 집사의 임무(任務)를 맡길 수 있고 안수 권사 및 집사로 투표를 받으면 위임 예식만 행하고 안수는 다시 하지 않는다.

제9조 무임 장로

1. 교회에 잘 봉사할 수 있는 무임 장로가 있는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그 장로를 제직회의 회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2.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에 필요하면 무임 장로에게 성찬 나누는 일을 맡길 수 있다.

제10조 권찰(勸察)

1. 제직회원 외에 권찰을 세워 교인 심방하는 일을 맡길 수 있으니 신앙이 독실한 남녀 교인 중에서 목사나 당회가 권찰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1개년이요 혹은 제직회원으로 권찰의 임무를 겸무하게 할 수도 있다.
2. 권찰의 임무는 구역을 정하고(1구역은 약10가정) 남녀 권찰에게 맡겨 매주간 혹은 매월 교인의 가정을 방문하고 믿지 아니하는 가정을 심방 전도하여 구역기도회도 인도하고 매월 정기(定期)권찰회로 회집하여 구역 형편을 각

각 보고한다.

제11조 혼상례(婚喪禮)

1. 혼상 예식에 번다(煩多)한 허례는 폐하고 정숙하고 간단히 행하며 비용은 절약하여야 한다.
2. 부모상에 상복은 소복(素服)을 입고 양복인 경우에 흰(白)상장(喪章)을 가슴이나 왼편 팔 위에 붙인다. 장례식에 상주는 베 감투(頭巾)를 쓰고 여자는 베 수건을 쓴다.
3. 복기(服期)는 부모상에는 1개년이고 부(夫)상에는 6개월간으로 한다.
4. 시신을 입관할 때에 관 안에 고인(故人)의 성경과 찬송가를 넣거나 또는 불에 태우는 일은 옳지 않고 잘 보관하여 고인을 추념(追念)함이 정당하다.
5. 별세자의 무덤이나 관 앞에 촛불을 켜거나 향(香)을 사르거나 배례(拜禮)하는 일은 금한다.
6. 부부(夫婦)간 일방이 별세한 후에 재혼(再婚)하려면 별세한 후 6개월이 지나야 결혼한다.

제12조 병자에게 안수

교회에서 헌법에 의지하여 성직(聖職)을 받은 자 외에 병자를 위하여 함부로 안수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제13조 문서 비치

교회마다 다음과 같은 문서(文書)를 비치(備置)하여야 한다.

1. 교인의 각종 명부, 2. 당회 회의록, 3. 공동 회의록, 4. 재관회의록, 5. 제직회의록과 각 단체 기관회의록, 6. 본 교

회 사기, 7. 교회 재산 목록, 8. 교회 물품 대장, 9. 각종 통계표, 10. 각 보고철과 참고 서류철.

부 칙

본 헌법적 규칙을 개정 증감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결의, 과반수의 가결로 한다.

V. 권징조례

권 징 조 례

제 1 장 총 론

제1조 권징의 의의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주신 권리를 행사하며, 설립하신 법도(法度)를 시행하는 것이니 교회에서 그 교인과 직원과 각 치리회를 치리하며 권고하는 사건이 일체 포함된다.

제2조 권징의 목적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勸病)과 존영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1. 이상 목적을 성취하려면 지혜롭게 하며 신중히 처리할 것이다.
2. 각 치리회는 권징할 때에 그 범행의 관계와 정형의 경중(輕重)을 상고하되 사건은 같으나 정형이 같지 아니함을 인하여 달리 처리할 것도 있다.

제3조 범 죄

교인, 직원, 치리회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혹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이 역시 범죄이다.

제4조 재판 안건

성경에 위반으로 준거(準據)할 만한 일이든지 성경에 의하여 제정한 교회 규칙과 관례에 위반된 일이든지 다른 권징 조례로 금지할 일이 아니면 재판 안건이 되지 아니한다.

제5조 재판건과 행정건

교인이나 직원에 대하여 범죄 사건으로 소송하면 하회(下會)와 상회를 불문하고 이런 사건은 재판건이라 하고 기타는 행정건이라 한다.

제6조 교인의 자녀

교회 입교인의 소생 자녀는 다 교인이니 마땅히 세례를 베풀고 교회의 보호 아래 두어 정치와 권징에 복종하게 할 것이요 또 그가 장성하여 지각 있는 나이가 되면 교인의 각 항 본분을 마땅히 이행할 것이다.

제 2 장 원고와 피고

제7조 누가 범죄하였다는 말만 있고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

단, 권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회가 원고로 기소(起訴)할 수 있다.

제8조 혹시 범죄 사건이 중대할지라도 이상한 형편을 인하여 판결하기 극난한 경우에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공의의 방침으로 실증을 주시기까지 유안(留案)하는 것이 재판하다가 중

거 부족으로 중도에 폐지하여 일반 권징의 효력을 상실하는 것보다 낫다.

제9조 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되었다 하여 소송하라 할때에 치리회는 그 원고로 하여금 마태 18장 15~17절에 있는 주님의 교훈에 의하여 먼저 피고인과 화목하게 하여 불 동안에는 재판을 열지 말 것이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하였다.

제10조 치리회가 직접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전조를 준용할 것이 없으나 치리회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치리회는 쌍방으로 중용히 사화(私和)하게 하고 가급적 재판하는 데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

제11조 치리회가 기소할 때에는 곧 대한 예수교 장로회가 원고와 기소 위원이 되며 이 밖에는 소송하는 자가 원고가 된다.

제12조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 그 회원 중 한 사람이나 혹 두세 사람을 기소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위원이 자초지종(自初至終) 원고가 되어 상회의 판결이 나기까지 행사할 것이다.

만일 소송 사건이 상회에 송달될 때에는 기소위원은 지원대로 상회원 중에서 자기 방조자를 지명 청구할 수 있고 상회는 그 청구에 의하여 본 회원 중 한 사람 혹 두 사람을 선

정하여 방조할 것이다.

제13조 교인이 다른 사람의 횡방을 당하고 그 처리회에 대하여 그 일의 조사 변명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회가 상당한 줄로 인정하면, 위원 일인 이상을 선정하여 조사 회보하게 할 것이요 그 처리는 그 위원의 회보를 접수하여 회의록에 기재함으로 그 사건을 종결한다.

제14조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제기(提起)하는 소송을 접수하려 할 때에는 신중히 고려함이 옳다.

1. 평소에 피고에게 대하여 혐의가 있는 자
2. 성격이 불량한 자
3. 재판 혹 처벌 중에 있는 자
4. 피고의 처벌을 인하여 이익을 얻을 자
5. 소송을 좋아하는 성질이 있는 자
6. 지각이 부족한 자

제15조 기소인이 처리회에서 선정한 위원이 아니요 자의(自意)로 소송한 자이면 개심(開心)하기 전에 처리회는 먼저 경계하되 「송사가 허망하여 너의 악의와 경솔한 심사가 발현되면 형제를 횡방하는 자로 처단하겠다。」 언명할 것이다.

제3장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

제16조 소장에는 범하였다는 죄상을 밝히 기록하고 죄증 설명서에는 범죄의 증거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니 범죄의 날짜

및 처소와 정형과 각조에 대한 증인의 성명을 자세히 기록할 것이다.

제17조 소장은 1조에 한가지의 범죄 사건만 기록하되 한 사람에게 대하여 여러 가지 범행을 동시에 고소할 수 있고 매사건에 죄증설명서를 각기 제출할 것이며 처리회는 결의에 의하여 그 모든 사건을 일시에 재판하되 매사건을 축조(逐條)하여 가부 결정한다.

제18조 손해를 당한 사건에 피해자측의 개인 혹은 두 사람 이상이 직접 고소하고자 하면 그 소장과 마태 18장 15~17절에 기록한 바 주님의 교훈대로 행하여 보았다는 진술서까지 제출할 것이다.

제 4 장 각항 재판에 관한 보통 규례

제19조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

제20조 처리회가 재판을 회집하면 회장이 먼저 그 이유를 공포하고 정중히 처리하기를 선언한 후 그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를 한번 낭독할지니 만일 원피고가 당석에서 심문을 원하지 않고 연기를 청원하면 다음 몇 사건만 행한다.

1.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 1통을 피고에게 교부할 것 (각 조

에 대한 증인의 성명도 자세히 기록할 것.)

2. 원피고와 그 관계자에게 다음 회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발할 것 (10일 이상으로 정함)
3. 소환장에는 그 치리회의 명칭을 기록하고 회장 서기가 날인할 것.
4. 원고 혹 피고의 청구에 의하여 증인도 출석하게 할 것이요 피고는 자기 증인의 성명을 원고에게 알게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제21조 소환장은 그 치리회가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니 본인에게 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후 거주소에 송달하되 개심하기 전에 의식송달(依式送達)한 증거가 있어야 함당하다.

제22조 피고가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치리회는 재차 소환장을 발송하되 그 소환장에 대하여 천연적 고장이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본 권징조례(34, 39, 47)에 의하여 시벌하겠다 밝힐 것이다.

피고가 두 번 소환을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면 궤석한 대로 판결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치리회가 피고를 위하여 변호할 자를 선정한다. 처음 소환할 때에는 재판기일을 10일 이상으로 정할 것이나 재차 소환할 때에는 치리회가 형편에 의하여 기일을 정할 수 있고, 증인 소환도 이에 준할 것이다.

제23조 피고는 소환장에 정한 기일 대로 그 치리회에 출석할 것이요 사고가 있으면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고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소원을 제출할 수 있다.

① 그 치리회가 정규에 의한 집회가 아닌 줄로 인정하는 때

- ② 소송 사건에 대하여 비법 간섭인 줄로 아는 때
 - ③ 고소장이나 죄증설명서가 양식에 위반되거나 헌법 적용이 부적당한 줄로 인정하는 때
 - ④ 기타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2. 처리회는 재판하기 전에 그 소원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의 변명을 듣고 그 직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단할 수 있다.

- ① 재판을 각하(却下)하는 일
 - ② 공평 정직하기 위하여 고소장이나 재판 기록에 위반된 것을 그 사건의 본성질을 변동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개정(改正)하기를 허락하는 일
3. 처리회는 그 고소한 사건이 적법적이요 고소장과 설명서가 재판할 가치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피고에게 향하여 그 소송의 사실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심문할 것이요 그 공술은 유죄라든지 무죄라든지 부답(不答)이라든지 다 회의를 기록하고 재판하여 처리할 것이다.

제24조 본 처리회는 재판하기 위하여 개회 날짜를 정하고 원 피고에게 정식 통지를 발한 후에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증인을 심문하되 원고는 피고의 증인에 피고는 원고의 증인에 대하여 각각 대질(對質) 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정당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2. 그 후에 원고나 피고는 증거를 반증(反證)하기 위하여만 새 증인이나 새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3. 재판 중에 쌍방의 새 증거가 발견되면 치리회가 채납할 수 있으나 채납하기 전에 피고에게 증인의 성명과 증거의 성질을 통지하되 치리회가 상당한 유예 시간을 주기로 공평히 작성한다.
4. 증인의 말을 청취한 후에 원고 피고가 진술한다.
5. 치리회는 즉시 원고 피고와 변호인과 방청인을 일체 퇴석하게 하고 비밀회를 연다.
6. 본 치리회원만 합의(合議)한다.
7. 고소장과 설명서의 각조에 대하여 일일이 가부 결정한다.
8. 본 안건 전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최종 결정은 회의록에 기록한다.

제25조 본 치리회는 고소장과 설명서와 피고의 답변과 최종 결정과 모든 처리 조건과 명령한 것과 그 이유를 회의록에 밝히 기록하고 상소될 때는 그 상소한다는 예고와 그 이유도 상세히 기록할 것이다.

쌍방의 구술(口述)과 각항 서류를 수집하여 서기가 서명 날인하면 완전한 재판 기록이 된다.

제26조 최상급을 제한 외에 다른 치리회에서 심리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원고 피고가 반항할 수 있고 그 반항하는 것을 회의록에 기재할 것이다.

제27조 원고와 피고는 변호인을 사용할 수 있고 구두(口頭) 혹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1. 본 장로회 목사 혹은 장로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지 못할 것이요 변호인된 자는 그 재판 회합 의석에 참여하

지 못한다.

2. 처리회가 소송의 원고가 될 때는 기소 위원(제 12조에 말한 위원)과 상회에서 선정한 방조 위원이 처리회의 변호인이 된다.

단 누구를 물론하고 변호 보수금을 받는 것은 불가하다.

제28조 재판 진행 중에 규칙 혹 증거에 대하여 쟁론이 발생하면 회장은 쌍방의 변명을 들은 후 직권으로 시비를 결정할 것이니 회원 중 누구든지 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재판회에 항의할 것이요 그 항의에 대하여는 이의(異議) 없이 회장이 즉시 가부 취결할 것이다. 이런 결정은 원고 혹 피고의 지원에 의하여 회의록에 기재한다.

제29조 재판할 때 처음부터 나중까지 출석하여 전부를 듣지 아니한 회원은 원고 피고와 그 재판 회원이 동의 승낙하지 아니하면 그 재판에 대하여 투표권이 없고 최상급 재판회를 제한 외에는 정회 혹 휴식을 불문하고 개회 때마다 호명하고 결석한 회원의 성명은 회의록에 기재한다.

제30조 원고와 피고는 등사비를 제공하고 그 안건 기록 등본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소 안건은 판결한 후 기록과 상소 판결문을 원하회(原下會)에 내려 보낸다.

제31조 처리회가 시벌하거나 해벌하는 때에는 장로회 예배 모범 제 16, 17장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처리함이 옳다.

제32조 처리회는 회원 3분의 1의 가결로 비밀 재판을 열 수 있다.

제33조 치리회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합당한 듯하면 재판이
귀결되기까지 피의자의 직무를 정지도 하고 성찬에 참여 못
하게도 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안건을 속히 판결함
이 옳다.

제 5 장 당회 재판에 관한 특별 규례

제34조 당회는 피고가 재판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
나 대리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할지라
도 심문에 대하여 응답하기를 불응할 때는 그 패려함을 회
개하고 당회에 복종하게 될 때까지 시벌할 것이다.

제35조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勸誡), 견책(譴責), 정직,
면직, 수찬 정지, 제명, 출교니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아니
하는 자에게만 한다.

단 해벌은 그 회개 여하에 의하여 행하거나 이에 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치리회가 의정(議定)할 것이다.

제36조 그 죄에 대하여 작정한 것을 교회에 공포 아니하기도
하며 공포할지라도 그 교회에나 혹 관계되는 교회에서만 할
것이다.

제 6 장 직원에 대한 재판 규례

제37조 복음의 영예와 발전은 목사의 명성에 관계됨이 많으므로 노회는 마땅히 조심하여 소속 목사의 개인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를 자세히 살필지니 그 목사됨을 인하여 편호(偏護)하여 불공정한 판결을 하지 말며 혹 그 죄를 경하게 벌하지 말 것이나 또한 목사에 대하여 사소한 곡절로 소송하는 것을 경솔히 접수하지도 말 것이다.

제38조 목사가 본 주소에서 떠나 먼 곳에 있어 피소된 때 그 본 노회가 실정은 알 도리가 없고 그 소송 발생한 지방을 관할하는 노회가 유죄한 줄로 생각하면 그 사건의 성질이 어떠한 것을 당연히 그 목사의 본 노회에 통지할 것이요 본 노회는 그 통지를 접한 후에 그 사건이 종교상 명예에 관계되는 것이면 즉시 재판하는 것이 옳다.

제39조 피고된 목사가 재차 소환함을 받고 자기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면 노회는 그 거역함을 인하여 정직함이 옳고 소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리할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면 수찬 정지에 처할 것이다.

제40조 어느 치리회를 물론하고 소송 중에 있을 동안에는 그 치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반 의사에 언권과 투표권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 피고를 정죄하게 되면 권계나 견책이나 정직이나 면직(정직이나 면직할 때에 수찬 정지를 함께 할 때도 있고 함께 하지 아니할 때도 있다)이나 출교할 것이요 정직을 당한

지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할 수 있다.

단 해벌할 때는 제 35조의 단항(但項)을 적용한다.

제42조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는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할 것이다 (그 행동이 교리를 방해하려 하여 전력으로 다른 사람을 권유하는 형편에 있는지 지식이 부족한 중에서 발생하고 도에 별도로 해되지 아니할 것인지 심사 후에 처단함이 옳다).

제43조 노회가 심사한 결과 그 안건이 사소한 사건이요 교인들도 그의 반성을 족한 줄로 알고 목사 시무에도 구애됨이 없으면 그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만 처리하고 그 소송사건은 취하(取下)하게 할 것이다.

제44조 악행을 인하여 목사직 해제를 당한 자가 깊이 회개할 지라도 오랫동안 특별히 모범될 만한 겸손과 덕을 세우는 행위가 뚜렷하여 그 소재지 치리회의 관할의 교역에 종사함이 도에 방해가 되지 아니할 줄로 확인할 때는 목사로 임직하되 당초 면직한 치리회가 직접 행사하든지 그 회의 결의대로 위탁받은 치리회가 행사할 것이다.

제45조 지교회에 담임목사된 자가 면직을 당하고 출교는 되지 아니하였으면 노회는 그 해직됨을 선언할 것이요 이런 경우에는 그에게 평교인의 이명서를 주어 원하는 지교회로 보내되 이명서에는 그 정형을 자세히 기록할 것이다. 담임목사를 정직할 때는 그 담임까지 해제할 수 있으나 상소한다는 통지가 있으면 그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

제46조 노회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피소된 목사의 직무를 임시 정지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재판을 속결함이 옳다.

제47조 장로 및 집사에 대하여 재판할 사건이 있으면 본장 각조에 해당하는 대로 적용할 것이다.

제 7 장 즉결 처단의 규례

제48조 누구든지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하거나 다른 곳에서 범죄한 것을 자복할 때는 치리회가 먼저 그 사실을 청취한 후 즉시 처벌할 수 있다.

1.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2일 이상의 연기를 청구할 권이 있다.
2. 이런 경우에는 범죄 사실과 결정한 이유를 회의록에 상세히 기록할 것이요 다른 안건과 같이 상소할 수 있다.

제49조 재판할 만한 범죄가 없는 입교인이 당회에 자청하기를 자기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노라 자인할 때는 당회가 이 사건을 신중이 고려하여 그 청원이 도리에 대한 오인(誤認)이 아닌 줄로 확인하면 그 청원을 임시로 허락하고 그 사실을 당회의록에 상세히 기록함이 옳다.

제50조 어떠한 입교인이든지 다른 지방에 옮겨 가면 본 교회 목사나 당회 서기는 그 거주를 그 지방 교회 목사 혹은 당회서기에게 통지할 것이다.

1. 다른 지방에 옮겨 간 교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2년이 경과하도록 이명서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본 당회는 재삼 탐문하여 그 회보를 접하기까지 그 성명을 별명부에 옮겨 기록(年月日을 상세히 기록할 것)할 것이다.
2. 어떠한 교인을 불문하고 다른 곳에 옮긴지 3년간 실종된 경우에도 당회는 전항을 준용하되 그 사유를 회의록에 상세히 기록할 것이다.
3. 책별인 명부에는 시별한 자를 기입하고 별명부에는 전1, 2항에 해당한 자를 기입하고 노회에 제출하는 통계표에는 이를 완전히 교인으로 셈하지 말 것이다.
4. 당회는 매년 노회에 통계표를 제출하기 전에 일반 교인의 명부에 일일이 검사하여 권징 조례에 의하여 정리하되 거주가 분명한 자에게는 먼저 통지함이 옳고 또 시별된 자에게는 해별되도록 힘쓸 것이다.

제51조 본지방에 거주하는 본 교회 입교인이 뚜렷한 범과가 없이 교회 각항 의식을 행하는 회석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당회는 그 교인을 출석하도록 권면할 것이요 1년이 경과하도록 일항 듣지 아니하면 당회는 그 교인에게 먼저 통지한 후 책별할 것이다. 그 후 그 교인에게 대하여 아무 비난이 없고 다시 교회의 종교 의식에 출석하면 해별한다.

제52조 무흠한 목사가 정치 제17장 제1조 제3조에 의하여 노회에 청원을 제출하면 그 목적과 이유를 상세히 알아 결정하되 제3조의 경우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만 1년간 유예를 지난 후 노회 관찰에 그 목사가 단 마음으로 유익하게 시무

하지 못할 줄로 인정하면 사직을 허락할 것이요, 그 성명을 노회명부에서 제거하고 입교인의 이명서를 주어 소원하는 지교회로 보낼 것이다.

제53조 어떠한 입교인이든지 본 교회의 이명서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하면 이는 무례한 일이니 본 당회는 제명하고 그 사건을 본 당회의록에 기재할 뿐이요 그 교인에 대하여 착수한 송사 안건이 있으면 계속 재판할 수 있다.

제54조 뚜렷한 범과 없는 목사가 본 장로회의 관할을 배척하고 그 직을 포기하거나 자유로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서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하면 노회는 그 성명을 노회 명부에서 삭제만 하고 그 사유를 회의록에 기재하되 그 사람에 대하여 착수한 송사 안건이 있으면 계속 재판할 수 있고 만일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파에 가입하면 정직이나 면직 혹은 출교도 할 수 있다.

제 8 장 증거조(證據調) 규례

제55조 치리회가 증거를 채용할 때에 마땅히 주의하여 공평하게 할지니 증인될 자 중에는 다 증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요 증인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도 다 믿을 만한 자가 못된다.

제56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자와 후에 상벌을 믿지 아니하는 자와 선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는 자 외에

는 채용할 만한 증인이 된다. 원피고는 각기 상대방의 증인 제출에 대하여 어떤 사람을 물론하고 거절할 수 있고 치리회는 그 증인에 대하여 채용할 가부를 결정할 것이다.

제57조 어떠한 증인이든지 가히 믿을 만한 것과 어느 정도까지 시인할 만한 것은 다음 경우들을 참작할 수 있다.

1. 원피고인의 친척되는 경우
2. 소송 판결에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3. 나이가 어린 경우.
4. 지력이 부족한 경우.
5. 품행이 악하거나 사나운 성품이 있는 경우.
6. 본교회 책벌 아래 있는 경우.
7. 성질이 조급하고 판별력이 없는 경우.
8. 어떠한 형편을 불문하고 그 소송 사건에 바른 말할 여부와 알 수 있는 여부와 간접으로 이해(利害)받을 관계가 있는 여부를 인하여 치우칠 폐가 있는 경우.

제58조 지아비는 아내에 대하여, 아내는 지아비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으나 치리회가 강권하지는 못할 것이다.

제59조 증거는 구두(口頭)로 하고 필기한 서면이나 인쇄한 문자로도 하고 직접으로 하며 형편을 따라 간접으로도 할 수 있다.

범죄 안건에는 한 사람의 증거 뿐이요 다른 증거가 없으면 소송 안건을 확실히 결정하기 어려우나 소장 한 통에 같은 종류의 죄를 열거하였는데 매사건에 대하여 각각 다른 증인이 한사람씩만 있을지라도 가히 믿을 만한 실증이면 그 소

장은 전부 결정할 수 있다.

제60조 본회 회원 외에 선후(先後) 심문할 증인의 동석을 허락하지 않는다.

제61조 증인을 심문하는 차서는 치리회가 심문한 후 그 회의 허락을 받아 증인 제출한 편에서 묻고 후에 상대자가 그 증인에 대하여 묻고 그 후에 그 재판회 위원이 심문할 것이나 그 사건에 관계 없는 말이나 회롱의 일을 묻지 아니할 것이요 필요한 사리만 나타내기 위하여 재판회의 특허를 얻은 것 밖에는 증인 제출한 자가 그 증인에게 증언을 암시하는 말로 묻지 못한다.

제62조 증인을 심문하기 전에 회장은 증인에게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서하게 된다.

「후일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문답할 것 같이 지금 알지 못함이 없으사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소송안의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니 사실대로 직언(直言)하며 사실 전부를 말하며 사실 밖에 덧붙이지 아니하기로 선서하겠습니까?」

제63조 증인에게 심문하는 말은 청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만 필기할 것이요 원고, 피고나 재판회가 필요로 인증할 때에는 증인에게 문답을 일일이 기록하고 회의석에서 낭독하여 증인의 확인 날인을 받는다.

제64조 치리회 서기(서기가 별세하였거나 출타하였거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시무하지 못할 때에는 회장이 대행함)가 기록의 원본(原本)이나 초본(抄本)에 서명 날인하면 상회 및

다른 회에서 족히 신용할 증거로 인정한다.

제65조 어느 회를 물론하고 전조와 같이 작성한 증인의 공술은 본회의 수집한 증거와 같이 인정한다.

제66조 재판 중에 원고 혹은 피고나 증인의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그 쌍방의 청원에 의하여 본 치리회가 목사 혹은 장로 몇 명을 증거 조사국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위의 증거 조사국 위원은 본 치리회 회원 아닌 다른 회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위의 조사국은 쌍방의 제출한 증거를 받을 것이요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조사하기 위하여 각 관계자에게 회집하는 날짜와 처소를 통지하고 조사할 때에는 본 치리회의 법규대로 구두로 문답하든지 필기한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되 증인에게 대한 원피고의 직접 문답과 교환 문답을 진행한다.
3. 이렇게 수합한 증거가 본건에 대한 관계 유무와 신용의 족부족(足不足)은 본 재판회가 결정한다.
4. 증거 조사국은 수취한 증거안에 서명 날인하여 본재판회 서기에게 교부한다.

제67조 본 치리회가 재판회를 열 때에 본 치리회 회원이라도 입증하게 할 수 있으니 그 회원도 다른 증인과 마찬가지로 선서 입증한 후에 여전히 본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68조 아무 교회 교인 중 누구를 막론하고 증인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출석하였을지라도 증언하기를

불응하면 그 형편대로 거역하는 행위를 징벌할 것이다.

제69조 어느 처리회의 종국 결안에 상소 기간이 끝난 후라도 피고를 면죄할 만한 새 증거가 발견되면 피고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수소(受訴) 재판회는 재심에서 공의가 나타날 줄로 알면 허락할 수 있다.

제70조 상회에 상소하여 재판 중에 긴급(緊重)한 새 증거가 발견되면, 상회는 재심하기 위하여 하회로 환송할 수 있고 쌍방이 상회에서 직결하기를 원하면 상회가 그 증거를 조사하여 판결할 수 있다.

단, 재심하는 경우에는 제 100 조를 적용한다.

제 9 장 상소하는 규례

제71조 당회나 노회에서 처리한 사건을 각기 차서에 의하여 상회에 상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검사와 교정 2. 위탁 판결 3. 소원 4. 상소

(1) 검사와 교정

제72조 본 교회와 부속회에서 처리한 사건은 그 당회에 보고할 것이요, 그 당회는 그 사건을 검사한 후에 접수하여 당회문부에 편입할 것이다.

당회 이상 가는 상급회는 각기 관하 각 회의록을 매년 1차씩 검사할 것이요, 각 하회가 그 회의록을 올려 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편의대로 올려 보내라든지 날짜를 정하여 올

려 보내라든지 독촉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73조 상회가 하회 회의록을 다음에 의하여 검사한다.

1. 경과 사건을 사실대로 기록한 여부
2. 처리한 사건을 교회 헌법에 의하여 결정한 여부
3. 사실을 지혜롭고 공평하게 덕을 세우게 처리했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제74조 상회가 하회 회의록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할 때에 그 하회 총대에게는 가부권이 없다.

제75조 상회가 하회 회의록을 검사하여 착오된 사건이 있으면 계책(戒責)하는 것을 본회 회의록과 하회 회의록에 기록하는 것이 항례이나 하회에 오착이 중대하여 오해(危害)가 있게 되면 상회는 부득이 하회에 명령하여 개정하게 하거나 변경하게 하되 기한을 정하여 준행 여부를 회보하게 할 것이다. 단 재판 사건은 상고를 접수 처리하기 전에는 하회 판결을 갑자기 변경하지 못한다.

제76조 상회는 어느 때를 물론하고 그 소속 하회가 헌법에 위반되게 처리한 사건이 있는 줄을 확인하면 하회로 하여금 정한 처소에 그 문서를 가지고 와서 처리한 형편을 보고하게 할 것이요, 그 착오된 사실이 명백히 발견되면 상회가 직접 변경하든지 하회에 환송하여 처단할 것을 지도할 수 있다. 혹시 어떠한 소원이나 상소를 불문하고 본 처리회나 혹 그 재판국에서 재판하는 중 판결언도 전에 피고 혹 원고가 상회원에게나 일반 민중에게 대하여 변론서나 요령서를 출간 혹 등사하여 직접 혹 간접으로 선전하면 처리회를 모

육하는 일이니 그 행동을 치리하고 그 상소를 기각할 수 있다.
제77조 하회가 각기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이단과 부패한 행위가 성행하며 뚜렷한 행악자가 징벌을 면하게 되며, 처결한 사건을 회의록에 누락하였는지 잘못 기록하였을 때 상회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면 하회로 하여금 회의록의 검사를 받게 한 후 문부의 잘 잘못을 물론하고 그 사건을 처리하되 제76조를 적용한다.

(2) 위탁 판결

제78조 위탁 판결은 하회가 상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인데 본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재판 사건에 대하여 지도를 구하는 것이나 보통 각회는 자체의 판별력으로써 각기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교회에 더 유익이 된다.

제79조 하회가 전례 없는 사건이나 긴중한 사건이나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형편상 상관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하회 결정이 공례(公例)나 판결례가 될 듯하거나 하회 회원의 의견이 한결같지 아니하거나 혹 어떤 사고로 인하여 마땅히 상회에서 선결하는 것이 합당한 안건은 위탁 판결을 구한다.

제80조 위탁 판결은 본회보다 한층 높은 회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니(1) 하회가 결정하기 전에 준비 재료로 상회의 지도를 구하기도 하며, (2) 직접 상회의 심사와 판결을 구한다. 지도만 구하는 안건이면 하회는 그 결정을 임시로 정지하고, 심사 판결을 구하는 것이면 그 사건은 상회에 전부 위임한다.

제81조 상회가 위탁 사건에 대하여 의논할 때에 그 하회 총대

도 참석하여 협의하며 투표할 수 있다.

제82조 상회가 하회 수탁(受託)사건에 대하여 심사 판결을 책임으로 할 것이 아니니 그 사건에 대하여 지시만 하든지, 혹은 지시없이 그 회에 환송하든지 상회의 결의대로 한다.

제83조 하회의 위탁으로 상회가 수리할 때는 그 안건 기록을 즉시 상회에 올려 보낼 것이요, 상회가 접수할 때에는 원고 피고의 진술도 청취한다.

(3) 소 원

제84조 소원(訴願)은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이니 하회 관할에 속하여 그 처리권에 복종하는 자 중 1 혹은 1인 이상이 행정 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 폐회후 그 회를 대리하는 재판국에서 결정한 행정 사건에 대하여도 본회 결정에 대한 것과 같이 상회에 소원할 수 있고, 그 재판국에서 결정할 때에 참여한 회원 중 3분의 1이 소원하는 일을 협의 가결하였으면 상회가 그 소원을 조사 결정할 때까지 그 위원회의 결정을 보류한다.

제85조 소원에 대한 통지서와 이유서는 하회 결정 후 10일 내로 작성하여 그회 서기에게 제출할 것이요(서기가 별세하였거나 있지 않거나 혹은 시무하기 불가능한 때는 회장에게 제출한다), 그회 서기는 상회 정기회 개최 다음날 안에 그 소원 통지서와 이유서와 그 안건에 관한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

제86조 재판 사건 외 행정 사건에 대하여 하급 처리회에서 결

정할 때에 참석하였던 자 중 3분의 1이 연명하여 소원을 선언하면 그 사건을 상회가 결정할 때까지 하회 결정을 중지한다.

제87조 소원하기로 성명한 자는 상회 그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소원 통지서와 이유서를 상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제88조 상회는 그 소원장이 규정대로 되고 소원할 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할 때에는 피소한 하회의 건결정과 그에 관계되는 기록을 낭독 후 쌍방의 공술을 청취한 후 그 사건을 판결한다.

제89조 상회가 그 소원이 적법인 줄로 인정할 때에는 하회의 작성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변경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 상회는 하회에 대하여 처리 방법을 지시한다.

제90조 소원을 제출한 자는 소원자가 되고 소원을 당한 자는 피소원자가 되는데 피소원자는 보통 하회가 되나니 그 하회는 회원 중 1인 이상을 대표로 정할 것이요 그 대표자는 변호인의 방조를 청구한다.

제91조 소원자나 피소원자 된 하회 회원등은 그 사건 심의중에는 상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

제92조 소원자나 피소원자는 그 상급회에 상고할 수 있다.

제93조 피소원자 된 하회는 그 사건에 관계되는 기록 전부와 일체 서류를 상회에 올려 보냄이 옳고 혹 올려 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반드시 가책(加責)할 것이요 기록과 서류를 올려 보낼 때까지와 그 사건을 심리 처결할 동안에 상회는 관계되는 쌍방의 권리를 의구히 보존하게 한다.

(4) 상 소

제94조 상소(上訴)는 하회에서 판결한 재판 사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이니 원피고를 불문하고 다 상소를 제기하는 자는 상소인이라 하고 상소를 당한 자는 피상소인이라 한다. 소송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상소하는 것 밖에는 다른 길이 없고 상소가 제출되면 하회 회원은 그 본회의 판결에 대하여 이의(異議)나 항의나 의견서를 제출할 뿐이요 언권이 없다.

1. 폐회 후 그 회를 대리한 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도 본회에서 행한 판결과 같이 원고 피고는 다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
2. 공소심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증거조(調)를 취급할 수 있고 상고심에는 증거조를 폐한다.

제95조 상소를 제기할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하회가 재판을 불법하게 하는 때.
2. 하회가 상소하는 것을 불허하는 때.
3. 하회가 어떤 한편에 대하여 가혹히 취조하는 때.
4. 불합당한 증거를 채용하는 때.
5. 합당하고 긴중한 증거 채용을 거절하는 때.
6. 충분한 증거 조사 전에 급속히 판결하는 때.
7. 소송 취급 상에 편견이 드러나는 때.
8. 판결 중에 오착이나 불공평이 있는 때.

제96조 상소인은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 통지서와 상소 이유 설명서를 본회 서기(서기가 별세하였거나 부재 혹

시무하기 불가능할 때에는 회장에게 제출한다)에게 제출할 것이요 그 서기는 그 상소장과 안전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다음 정기회 개최 다음날 안에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

제97조 상소인 자기나 대리할 변호인은 상회 정기회 개최 다음날에 상회에 출석하여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

상소인이 전기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불가항력의 고장을 인하여 위의 기간 안에 출석하지 못한 믿을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상소는 취하한 것으로 인정하고 본 하회의 판결은 확정된다.

제98조 상소인과 피상소인 되는 하회 회원은 그 사건 심의하는 상회석에 회원권이 정지된다.

제99조 상소인이 상소 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예정 기일 안에 제출하였으면 상회는 규례대로 재판한다.

1. 상회는 하회의 판결과 상소 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낭독하고 당사자 쌍방의 설명을 청취한 후에 상소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2. 상회는 상소를 처리하기로 작정한 후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 ① 상소 사건에 관한 하회 기록 전부를 자초지종 낭독한다 (당사자 쌍방의 승락으로 필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묵과할 수 있다).
 - ② 당사자 쌍방이 구두로 진술하되 시작과 종결은 상소

인으로 하게 한다.

- ③ 당사자 쌍방을 퇴석하게 하고 상회 회원이 합의(合議)한다.
- ④ 상소 이유 설명서에 기록한 각조를 회장이 토론 없이 축조 거부하여 각조에 상소할 이유가 없고 또 하회 처리도 착오가 없는 줄로 인정하면 상소는 하회 판결이 적합한 줄로 인정할 것이요, 각조 중 1조 이상이 시인할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상회는 하회 판결을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 하회로 갱심(更審)하게 하든지 편의대로 작성할 것이요 상회가 하회 판결을 변동할 때에는 그 결정과 이유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필요로 인정하는 때는 그 판결 해석의 대요를 회의록에 기재한다.

제100조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밖에 시벌은 상회 판결 나기까지 결정대로 행한다.

제101조 상소가 제기되면 하회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 전부와 일체 서류를 상회에 올려 보낼 것이니 만일 올려 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하회를 책하고 이를 올려 보낼 때까지 하회의 결정을 정지하게 한다.

제 10 장 이의와 항의서

(본 치리회 회원 상호간에 행하는 일)

제102조 이의(異議)라 함은 어느 치리회에서든지 의안 결정할 때에 회원 중 1인 이상 되는 소수(小數)가 대수(大數)의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함을 표시한다.

제103조 항의라 함은 이의보다 더 엄중히 하는 것인데 회원중 1인 이상 되는 소수가 그 회의 행사나 작정이나 판결에 대하여 과실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니 그 이유서도 첨부한다.

제104조 이의와 항의서가 합식(合式)이요 또 언사가 정당하며 다수에 대한 무리한 풍자가 없으면 회의록에 기입한다.

제105조 항의가 본 치리회의 인용한 공례와 의사를 오해한 것이 있으면 본회는 항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여 회의록에 기재할 수 있으며 답변서를 작성한 후 항의서를 제출한 자가 항의서를 개정할 수 있고, 본 치리회가 답변서를 또한 개정함으로 그 사건을 끝낸다.

제106조 본 치리회 내 결의 사건에 대하여 투표권이 없는 자는 이의서와 항의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재판안건은 부편 투표한자밖에는 이의서와 항의서를 제출하지 못한다. 단 재판국에서 판결한 사건에 대하여는 본회회원도 이의서와 항의서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본회 폐회 중 본회를 대리하는 재판국에서 판결한 사건에 대하여는 판결 언도 후 10 일 이내에 본회 회원이나 재판국 위원은 이의와 항의서를

작성하여 재판국 서기에게 교부하며 그 재판국 혹은 재판국 위원은 판결 후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재판국 서기에게 교부할 것이다. 재판국 서기는 이의서와 항의서와 답변서를 일일이 등본하여 본회 서기에게 교부하여 본회 회의록에 기재하게 한다.

제 11 장 이명자 관리 규례

제107조 목사나 교인은 어느 때와 어느 지방에서 범죄하였든지 그 소속 치리회의 재판을 받는다.

제108조 교인이 다른 지교회에 이명서를 받은 후에 그 지교회에 가입하기까지는 여전히 본회 관할에 속하고(이명서 수취한 후에는 시무하던 직분은 즉시 해제되고 본교회 공동의회에서 언권과 투표권이 없다) 받은 이명서를 1년 이내에 본교회로 환부하면 당회는 받은 후에 회의록에 기재할 것이나 전날 시무하던 직분을 계속할 수 없다.

제109조 목사도 전조와 같이 다른 회에 옮길 이명서를 수취한 후에 그 노회에 가입하기까지 여전히 본노회 관할에 속하고(이명서 수취일로부터 본노회 안에서 언권과 투표권이 없다) 1년 내로 이명서를 본 노회에 환부하면 노회는 이 사건을 회의록에 기입하고 그 회원권은 여전히 지속한다.

제110조 목사, 강도사, 목사 후보생에게 이명서를 교부할 때에 그 지정한 노회의 명칭을 분명히 기입할 것이요 지정한

노회가 현존한 동안에 다른 노회는 그 회원을 받지 못한다.
제111조 지교회가 폐지될 때에 그 소관 노회가 그 교인을 직할하여 다른 지교회에 속한 이명서를 교부한다.

그 폐지된 당회에서 착수하였던 재판 사건이 있으면 노회가 계속 처리한다.

제112조 노회가 폐지되면 대회가 그 노회 회원을 직할하여 다른 노회에 옮길 이명서를 교부할 것이요 그 폐지된 노회에서 착수하였던 재판 사건이 있으면 대회가 계속 처리한다.

제 12 장 이주(移住) 기간에 관한 규례

제113조 교우가 다른 지교회에 옮기는 경우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받은 회원증과 이명서를 1년 내로 옮기는 교회에 납부한다.

1. 부모가 옮길 때에 세례 받은 유아(수찬 연령 미만자)가 있으면 그 이명서에 함께 기록한다.
2. 이명서에는 옮기는 교회를 분명히 기록할 것이요 그 교회는 이명서를 접수 처리한 후에는 즉시 이명서 발송한 교회에 통지한다.

제114조 목사, 강도사, 목사 후보생도 전조와 같이 옮기는 경우에 이명서에 기입한 대로 그 노회에 가입하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받은 이명서를 1년 내로 옮기는 노회에 교부할 것이요 입회를 허락한 노회는 즉시 이명서를 발송한

노회에 통지한다.

제115조 교인이 본향과 교회에서 떠난 지 2개년 이후에 이명서를 청구하면 본 당회는 이명서에 그 사실을 기입한다.

제116조 범죄 안건은 범죄 발각 후 1년 내에 개심할 것이요, 교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범행이 아니면 3년을 경과한 후에는 개심할 수 없다.

제 13 장 재판국에 관한 규례

1. 노회 재판국

제117조 노회는 본 관내 목사와 장로 중에서 재판국원을 투표 선정할 수 있으니 노회 재판국의 국원수는 7인 이상으로 정하되 그중 과반수는 목사로 선택한다. 노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 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할 수 있다.

제118조 재판국은 본국원 중에서 국장과 서기를 택할 것이요, 위탁을 받은 안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여 교회 헌법과 노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되 처리 후에 보고한다.

제119조 재판국원의 성수는 국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하되 반수 이상이 목사가 되어야 한다.

제120조 재판국원이 회집 날짜와 처소는 본 노회가 결정하거나 노회의 결정이 없으면 재판국이 결정한다.

제121조 재판국이 본 노회 개회 시무 중에서 위탁 받은 안건을 판결하였으면 그 판결을 즉시 보고할 것이요 보고한 후에는 본 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

1. 노회가 재판국의 보고를 전부 채용 혹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할 때는 그 안건 전부를 재판 규칙대로 직접 심리 처결할 수 있다.
2. 본치리회가 폐회한 후 본회를 대리한 재판국에서 재판한 안건은 공포 때로부터 본 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

제122조 재판국 서기는 재판 사건의 진행 전말과 판결에 대하여 상세한 기록을 조제(調製)하고 회장과 서기는 그 기록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등본 날인하여 원피고와 본노회 서기에게 각 한통씩 교부한다.

제123조 재판국은 그 판결을 본 노회 서기에게 위탁 보고하든지 친히 보고할 것이요 본노회 서기는 그 기록과 본회 회록을 함께 상회에 올려 보내어 검사를 받는다.

2. 대회 재판국

제124조 대회는 상설 재판국을 두고 목사 5인 장로 4인을 국원으로 하되 상비 국원제로 3조에 나누어 매년 3인씩 개선한다.

1. 대회 중에 재판국의 결원이 있으면 대회가 보결하고 대회 폐회 후에 결원되었으면 대회장이 자백하여 대회 개회 때까지 시무하게 한다.
2. 대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 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

제125조 재판국은 국장과 서기를 본 국원 중에서 매년 선거할 것이요 위탁 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여 교회의 헌법과 대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되 대회에 보고한다.

제126조 대회 재판국의 성수는 4분의 3출석으로 하되 그 중 목사가 반수 이상이라야 한다.

제127조 대회 재판국의 집회 날짜와 처소는 대회가 정하거나 대회의 결정이 없으면 재판국이 정한다.

제128조 대회 재판국의 판결은 대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제129조 재판국 서기는 재판 사건의 진행과 심리 판결한 것을 상세히 조서에 기재하고 국장 서기는 그 조서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본 날인하여 원피고와 대회 서기에게 각 한통씩 교부한다.

제130조 재판국은 그 판결 사건을 대회 서기에게 보고할 것이요 대회 서기는 접수한 등본을 본회의록과 같이 보관한다.

제131조 대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대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대회 폐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

제132조 재판국 비용은 대회가 부담한다.

제133조 대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는 그 결의대로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상설 재판국 규칙을 적용한다.

3. 총회 재판국

제134조 총회는 상설 재판국을 두고 목사 8인, 장로 7인을 국원으로 선정하되 한 노회에 속한 자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원은 상비 위원제로 3조에 나누어 매년 5인씩 개선하여 개회 때부터 시무할 것이요 임기 만료한 국원은 향후 1년간 개선되지 못할 것이며 총회의 다른 상비 위원으로 재직한자도 재판 국원이 되지 못한다.

1. 총회 개최 중에 재판국의 결원(缺員)이 있으면 총회가 보결하고 총회 폐회 후에 결원이 되었으면 총회 회장이 자백하여 총회 개회 때까지 시무하게 한다.
2. 총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 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 상설재판국 운영이 되지 못할 시에는 매 직면사건 마다 총회장이 재판국원을 임명한다.

제135조 재판국은 회장과 서기를 본국원 중에서 매년 선거할 것이요 위탁 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여 교회의 헌법과 총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되 총회에 보고한다.

제136조 총회 재판국원의 성수는 11인으로 정하되 그중 6인이 목사됨을 요한다.

제137조 재판국의 회집 날짜와 처소는 총회가 의정하거나 재판국이 의정한다.

제138조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제139조 재판국 서기는 본국 재판 사건의 진행과 예심 판결을 상세히 조서(調書)에 기재하고 국장 서기는 그 조서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본 날인하여 원피고와 총회 원서기에게 각 한통씩 교부한다.

제140조 재판국은 판결 사건을 총회 서기에게 위탁하게 하든지 친히 보고할 것이요 총회 서기는 접수한 등본을 본회 회의록과 같이 보관한다.

제141조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 총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 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폐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

제142조 재판국 비용은 총회가 지불한다.

제143조 총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는 그 결의대로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상설 재판국 규칙을 적용한다.

제 14 장 치리회의 재판 규례

제144조 어느 회의든지 그 동등된 회의를 상대로 소원할 일이 있으면(제 84 조, 제 93 조 참조)한층 높은 상회에 기소할 것이나 이런 경우에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에 피고된 회의 서기와 그 상회 서기에게 통지한다.

제145조 어느 회의든지 전조와 같이 기소하고자 하면 대리 위

원을 선정하여 초심(初審)부터 종심(終審) 판결까지 위임할 수 있다.

제146조 소원을 접수한 상회는 그 사건을 조사하여 이유가 상당하면 피고 회의 결정 전부 혹은 일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 피고 회의에 대하여 처리할 방법을 지시할 것이요, 원고나 피고 회의는 또 그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